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12



Contents

0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제도

1. 재난과 필수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2
2. 도입배경	4
3. 주요개념	10
4. 유사제도와 비교	28
5. 코로나 관련 해외대응 사례	57
6. 관련법령 주요내용	63

02

추진체계

1. 총괄	70
2. 고용노동부	71
3. 지방자치단체	76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80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88

03

실태조사

1. 개요	92
2. 실태조사 항목	93
3. 조사방식 및 범위	98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99
5. 실태조사 후 조치	100

04

지원계획 수립·시행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106
2. 상황모니터링	108
3. 지원위원회 소집	110
4. 지원계획 수립	110
5. 지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116
6.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협조	117

05

평가·포상

1. 평가목적	128
2. 평가항목	130
3. 평가절차	131
4. 포상의 실시	13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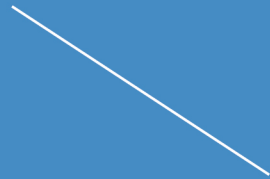
필수업무 관련 Q&A

1. 필수업무 및 종사자 판단기준	140
2. 실태조사	141
3. 적용순위	142
4. 지원위원회 개최 시기	143
5. 적용대상	144
6. 지역위원회 운영	145

07

부록

Ⅰ 「필수업무종사자법」	148
Ⅰ 「재난안전법」	160
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185
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187
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	189
Ⅰ 재난유형별 관련법령 현황	195
Ⅰ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기관 및 소관부서 현황	20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

1. 재난과 필수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2. 도입배경
3. 주요개념
4. 유사제도와 비교
5. 코로나 관련 해외대응 사례
6. 관련법령 주요내용
7. 정책환경 및 지원계획의 기본원칙



1. 재난과 필수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가. 필수업무 인식의 변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함)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상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던 노동을 수면 위로 드러냄(이승윤 외, 석재은 등)
 -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멈춤’을 경험하자 멈추지 못하는 노동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였고
 - 이러한 종사자들이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노동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임

미국 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계급의 분열과 그 안의 불평등을 조명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COVID-19 팬데믹 국면에서 원격근무로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사무직 노동자(The Remotes)가 있는 반면,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노동을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The Essentials), 강제 무급휴직이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 감옥, 이민자수용소, 노숙인시설 등에 있는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등 4개 계급으로 새롭게 분화되며 불평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2020.4.27.)

- 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2020.3.11.)과 장기화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업무,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업무, 환경미화업무 등 이른바 ‘필수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석재은, 신수정 등)

* 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로 나누는데,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함. WHO는 코로나19를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고 선언(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

- 주로 저임금 또는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측면도 있음
-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이 필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우리사회의 유지를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이승윤 외)

나. 필수업무의 개념화

-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화는 코로나19 이후 정책 대상으로서의 필수노동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필수적인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박고은 외)
-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이전부터 저숙련·저임금 직종으로 제도화되어 취약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불가피한 대면 및 접촉 업무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중적인 문제를 경험(OECD, 2020b; Rasnača, 2020)

○ 특정 재난상황에서 중단되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은 업무가 있는 반면,

- 중단되거나 사라질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가 있고, 이는 필수 업무를 개념화 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음

필수업무는 꼭 수행되어야 하고 명백히 사회에 유익한 직업이 포함된다. 단지 그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받는 보수와 처우가 나쁠 뿐이며 종종 종사자들은 무례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힘들게 일해야 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과소평가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유용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데이비드 그레이버, 「불싯잡 Bullshit Jobs 중에서」)

2. 도입배경

- 코로나19팬데믹을 마지막 팬데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인류와 병원체는 승부가 나지 않는 이 영원한 투쟁을 반복하며 공존해 가고 있다.
- 재난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할 수는 없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정적으로 규범화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극복을 위한 직접적 대응뿐 아니라,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한국일보 커지는 돌봄공백...맛벌이 절반 "휴업·퇴사 고민중" 서울신문 25단계 거리두기' 후폭풍... 포장 폐기를 산처럼 쌓았다 연합뉴스 '울진 산불' 지쳐가는 진화대원들... "사명감으로 버틴다"



- 이에, 각 국에서 재난 시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재난에 따른 종사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필수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정책 시행

* 유럽, 미국, 캐나다 등[참고1]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역 및 건강보호 강화, 처우개선 등 65개 추진과제를 담은 관계부처합동 대책을 발표하고('20.10.6. 1차, '20.12.14. 2차)[참고2]

- 향후 다양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 함)」을 제정('21.5.18.)

법 제정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가. 제도 필요성

■ 재난은 자연적 사건일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이 타격을 가하는 동안에는 자연의 탓이나

-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경제적·사회적 현상이고 재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적절한 계획과 조치가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치 등 재난 자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 재난대응 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업무의 유지와 그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

■ 재난의 빈도와 강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 똑같이 자연 발생하는 현상이라도 태풍이나 지진 같은 확률적 예측을 할 수 있는 자연재난(발생시기, 장소, 규모 등 예측은 불가능)과 사회적 재난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파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은 다를 수밖에 없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할 필요

-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입법 필요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차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은 재난 그 자체의 예방(제4장), 대비(제5장), 대응(제6장)과 복구(제7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재난대응 등 조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필수업무)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

관련 조문

「재난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난극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

관련 조문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1】 해외 주요국 사례

◇ 주요국들은 ①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②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 종사자 (Essential(Key) Worker)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도

유럽 	① (EU) 필수노동자*들이 EU 국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대상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 ▶ 운송, 건강관리, 노인 돌봄, 보육, 식품, 공공시설 종사자 등 ② (영국) 영 보건부, 필수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진 실시 ③ (이탈리아) 의료부문 근로자 대상 최대 1천€(약 136만원)의 '베이비시터 보너스' 지급을 통해 보육 비용 지원
미국 	① (대상) 의료, 공공안전, 에너지, 통신, 교육, 교통 등 18개 필수노동자 분야 ▶ 미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라 지정(3.19) ② (지원) 4.9.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등을 담은 「Heroes act」 제정 추진(민주당) ▶ 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법 ▶ 하원 통과, 공화당 다수인 상원은 부결  ▶ 총 3.4조\$(약 4.1천조원) 규모의 추가예산 법안, 필수노동자 대상 최대 2.5만\$ (약 3천만원)씩 안전수당 지급, 고용유지 보장 등의 내용 포함
캐나다 	① (대상) 의료·사회 서비스, 돌봄서비스, 청소, 교통·물류, 건물 유지관리 등 ▶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중심으로 필수노동자 자격범위 결정 ▶ 퀘벡주 예: 주정부 지정 '필수직군' 종사, '저임금'을 받는 퀘벡주 '거주민' ② (지원) 저임금(월소득 2.5천\$ 미만) 필수노동자의 임금 인상(5.7) ▶ 총 약 40억\$(약 3.5조원) 중 연방정부 75% + 각 주정부 25% 보조 “건강상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Justin Trudeau 총리, 5.7) ③ (주별 추가지원) BC주의 경우, 필수노동자로서 최전선(공중보건, 사회서비스, 911 등 긴급대응)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저소득 육아 보조금 지원

【참고 2】「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코로나19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 필요
- 11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TF 운영, 예산 및 법률 제·개정을 포함한 분야별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 마련('20.12.14.)

* TF구성: 기재·고용·행안부(총괄), 복지부(보건·의료, 돌봄), 국토부(운송), 환경부(환경미화), 산업부(기타 산업), 중기부, 공정위, 질병청, 보훈처 등

■ 주요내용

- (보호·지원 범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 ①감염·산재위험에 노출, ②과로·취약한 근무여건, ③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등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

● 추진과제

구분		주요내용
총괄대책		필수노동자 방역 지원, 맞춤형 건강진단 지원 등, 고용·산재보험 확대 및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등
분야별 대책	보건의료	의료인력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 방역소독요원 보호지침 마련 등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민간·돌봄서비스체계 제도화 (사회서비스원법·가사법 제정),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운송서비스	대리·이륜차 배달기사 등 과도한 비용부담 관행(보험료, 사고책임 등) 개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 등
	환경미화	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노후시설 개선 및 건강진단 확대 등
	기타(콜센터)	집단감염 등 취약 콜센터 대상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

3. 주요개념

가. 재난

1) 정의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함(「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 * 유엔개발계획(UNDP):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
- * UN 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재난이란 해당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인적, 물적, 경제·환경적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예기치 않은 대규모 피해 사건
- * 재난역학연구센터(CRED): 재난이란 대규모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예측치 못하고 갑자기 발생한 상황으로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지역의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

2) 유형

- 「재난안전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같은 자연재난이라도 국지적·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감염병, 미세먼지 등을 제외한 화재·붕괴·폭발 등과 같은 사회재난은 특정시기,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는 특징
 -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그 원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해측면과 대응측면에서는 복합적인 상황과 맞물려 구분의 의미는 크지 않음. 예를 들어 자연재난(지진·풍수해 등)이 화학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가능

I 재난의 의미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대규모 재난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

I 대규모 재난의 의미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나. 필수업무

1) 정의

-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의 재난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태풍·홍수·대설·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화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 등 매우 광범위한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법 제2조제1호)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법 제2조제2호)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재난 유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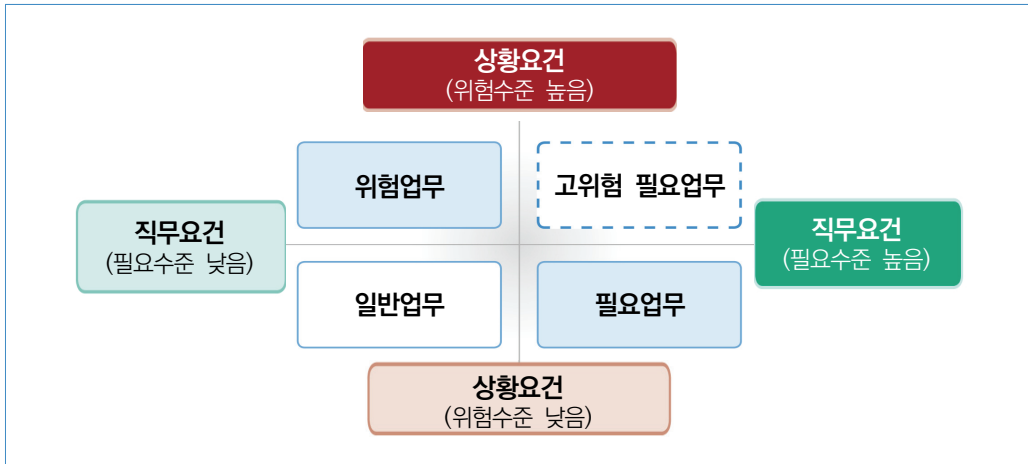
2) 판단기준

- 필수업무의 범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의 필요성(직무요건)과 재난발생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상황요건) 변화 등 재난유형별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함
- 업무의 필요성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해당 업무가 재난의 대응과 복구(기능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예시(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업종, ▲(복구·유지) 노인·장애인·아동 돌봄(생명·신체 보호), 택배·청소업(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의 유지) 등

- 필수업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의 분류를 참고할 수 있음¹⁾

〈 직무·상황 요건에 따른 필수업무 분류 〉



3) 지정형태

- 지원위원회는 재난유형과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단계별(5단계), 직종별, 직업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필수업무 지정 가능

* **예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병원 청소·주차 등 시설관리 위탁업체 소속 종사자, ▲(직종별) 회사·공공기관내 콜센터 직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운수 및 창고업(49~52)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2.육상 여객 운송업	49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7.사회복지 서비스업	871.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에서는 보건의료, 돌봄, 여객·물류 운송, 환경미화 업종 및 콜센터 등을 필수업무에 포함

1)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연구」 참고(2021)

- '22.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있어서는 '산불진화 업무'가 필수업무로 지정됨

4) 필수업무 범위 지정

-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수 업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재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업무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필수업무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는 폭넓게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 또한 전국 공통으로 필수업무에 포함해야 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
 - 필수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는 경우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 감염병 뿐만 아니라, 태풍·홍수·원전사고 등 「재난안전법」에 따른 광범위한 모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업무나 업종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제정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도 고려
- * 특히,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상황(피해규모, 사회적 영향 등)까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 등을 위한 필요업무 범위를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음

구분	송옥주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
지정시기	재난발생 시 (위원회 의결)	평시 지정 (위원회 의결)	재난발생 시 (위원회 의결)
지원계획 수립·시행	재난발생 시	정기·상시 (기본계획 3년, 시행계획 1년)	재난발생 시

【참고 3】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 대상 범위(27개 직종)

업종(분야)	세부직종
보건 의료(4)	의료시설 간호인력 의료시설파견의료인력(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방역소독인력(공공/민간)
돌봄 서비스(11)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돌봄지원사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사 노인돌봄 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초중고방과후 강사
운송(7)	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유통관련 배송기사 대형 화물차주 택배기사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환경 미화(4)	환경미화원(직/공영) 환경미화원(위탁)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재활용품 선별원
기타(1)	콜센터상담원

【참고 4】 코로나19관련 각국의 필수업무 분야²⁾

〈미국〉

	필수 분야		필수분야
1	초기 대응자 업무(경찰, 소방 등)	18	창고 저장, 분배 업무
2	입원 환자 의료 서비스	19	청소 및 건물 관리 업무(수위, 수리/유지보수 등)
3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	20	폐기물 처리 업무(폐기물의 수집·운송·폐기 등)
4	조제 업무	21	정보서비스 업무 (뉴스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등)
5	의료 검사와 진단서비스 수행시설 업무	22	정부(주, 지역, 부족)의 업무 중 필수 업무
6	가정 공동체 기반 업무(가정 의료, 재택간호 등)	23	학교 교육, 영양 및 기타 업무
7	코로나19 관련 생의학 연구	24	세탁 업무(세탁 서비스 회사 업무 등)
8	행동 건강 업무(정신 의료 업무 등)	25	선거 업무
9	간호, 거주 간호 업무	26	유해 물질(코로나19 샘플 등)의 관리, 대응 업무
10	가족 돌봄 업무(보육 서비스 등)	27	소독 업무
11	사회복지 업무(성폭력 피해자·노숙자 쉼터 등)	28	임상 연구, 개발, 시험 업무
12	공중 보건 업무(역학 활동, 예방·대응업무)	29	장례 업무(장례, 화장, 매장, 관련 업무)
13	부족(원주민) 필수 서비스	30	물리치료, 언어 병리학 및 기타 치료 업무
14	식품품점 및 잡화점 관련	31	치과 업무
15	식당 업무(포장, 배달 포함)	32	미국 우편 서비스 근로자 업무
16	식량생산 업무 (농업/어업/임업/축산업/가공업 등)	33	호텔 및 숙박시설 업무(자가격리에 활용)
17	수송 업무(대중교통, 상품 운송 등)	34	통신회선과 장비의 설치·수리 업무

〈캐나다〉

	필수 분야		필수분야
1	에너지, 발전 등	6	수자원 관리
2	정보통신 분야	7	교통
3	금융	8	보안
4	보건	9	정부업무
5	음식관련	10	제조업 등

2) 고용노동부,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연구」, 2021

〈영국〉

	필수 분야	필수분야
1	보건·사회복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간병인 등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청소부 및 운반원 등의 지원인력과 의약품 및 보호장비 공급자 등 폭넓은 직업군을 필수노동자로 판단
2	교육 및 보육	교사·보육 교사 및 관련 지원인력 등
3	핵심 공공서비스	사법제도 관련 필수인력, 종교계 직원, 주요 일선 업무 및 사망자 관리업무 수행직원, 공영방송 관련 직원 등
4	정부 행정 부문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에 극히 중요한 행정직업군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만 필수노동자에 해당됨
5	식료품 및 필수재화	생산·유통·판매자 및 배달원 등
6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경찰, 국방부 직원, 소방·구조 관련 직원, 국가범죄수사국 직원, 그리고 국경보안 및 교도소 직원 등이 포함
7	교통 및 항공	육해공 및 철도를 통한 운송 부문 관련 종사자들도 필수노동자에 해당
8	가스·전기·수도·통신 등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유류, 가스, 전기, 수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직업군,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및 우편서비스 직업군, 그리고 필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됨

【참고 5】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단계별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1개	77개	232개	495개	1,196개
A.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농업	012.축산업	0121.소사육업	01211.젖소사육업
B.광업(05~08)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석탄광업	0510.석탄광업	05100.석탄광업
C.제조업(10~34)	10.식료품 제조업	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도축업	10111.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전기업	3511.발전업	35111.원자력 발전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수도업	360.수도업	3601.생활용수 공급업	36010.생활용수 공급업
F.건설업(41~42)	41.종합 건설업	411.건물 건설업	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단독 주택 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45~47)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1.상품 중개업	4610.상품 중개업	46101.산업용 농· 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H.운수 및 창고업(49~52)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2.육상 여객 운송업	4921.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12.시내버스 운송업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숙박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호텔업
J.정보통신업(58~63)	61.우편 및 통신업	611.공영 우편업	6110.공영 우편업	61110.공영 우편업
K.금융 및 보험업(64~66)	64.금융업	641.은행 및 저축기관	6412.일반은행	64121.국내은행
L.부동산업(68)	68.부동산업	682.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2.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68221.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1.전문 서비스업	716.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0.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00.기타 전문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2.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1.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11.건축물 일반 청소업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2.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14.보건 및 복지 행정
P.교육 서비스업(85)	85.교육 서비스업	854.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1.특수학교	85410.특수학교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7.사회복지 서비스업	871.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스포츠 서비스업	9111.경기장 운영업	91111.실내 경기장 운영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11.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95110.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97.가구 내 고용활동	970.가구 내 고용활동	9700.가구 내 고용활동	97000.가구 내 고용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99)	99.국제 및 외국기관	990.국제 및 외국기관	9900.국제 및 외국기관	99001.주한 외국 공관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

다. 필수업무 종사자

1) 정의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법 제2조),

- 재난 발생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재난 유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I 용어의 의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³⁾

- 방역을 위한 락다운(lockdown) 상황에서도 대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국가(ILO, 영국 등)는 “최전방 종사자(Frontline worker)”로,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미국, EU 등)는 “핵심 종사자(Essential worker)”로 지칭하고 있음

2) 범위

● 필수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태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노무제공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할 수 있음

3) 고용노동부,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연구」, 2021

- 이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나 위탁·용역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임

잘못된 ◆◆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의 구분

- 원론적으로는 모든 노동은 필수적이며 보호되어야 하나(포괄성), 「필수업무 종사자법」의 도입 취지상 재난상황에 따라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는 제한적이며 다양할 수 있음(필수성)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는 그 의미가 같지 않으며,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상위개념에 보호·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이 포함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의 청소·경비·급식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은 소득, 고용형태, 근로환경, 처우수준,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재난상황에 따라 이들이 모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수 있지만, 재난유형·규모 등과 근로환경·처우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는 같거나 더 좁게 지정될 수 있음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 수행자 중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판단기준

-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수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요건(보호·지원 필요수준)과 직무수행여건(역할수준) 등 재난유형별 다양한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함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업무환경·절차 등의 변화, 업무량 증감 등으로 종사자의 건강·고용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의 분류를 참고할 수 있음

〈산불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필요성 분류 예시〉



5) 지정형태

- 지원위원회는 필수업무 범위, 재난유형과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한국 표준직업분류 항목(5단계) 범위에서 정하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가능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3.간호사	2430.간호사	24301.전문간호사
4.서비스종사자	42.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1.요양 보호사

- 재난상황에서의 보호·지원 필요성에 따라 업종과 직종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청·파견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임

* 美.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산업분류 기준으로 우선 판단하되, 직종으로 보완하고, 종사자의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등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

명칭	주요내용(OECD 기준)	구분
핵심노동자 (essential worker, key-)	락다운(lockdown) 상황에서도 원격업무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업종의 종사자 (병원, 식품판매업, 건물관리, 농업 등)	OECD·EU·미국 등
최전방 노동자 (frontline-)	경제활동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처우가 열악한 업종의 종사자 (보건의료, 식품의 가공·판매, 배달 등)	OECD·ILO·영국 등

6)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정

-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는 재난유형·상황과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난유형·상황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 없이 사전에 필수업무를 지정할 경우
 - 재난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사전 지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종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갈등 야기 가능성도 고려

송옥주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
제4조(필수업무의 지정)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2. “대면업무”란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환경, 통신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국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 중 제1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업종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의 유효기간

- 필수업무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워,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발생 후에 정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재난 발생 후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는 해당 재난에 대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기간의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참고 6】 각국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및 직종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직종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병원업, 식품소매업, 도매업과 같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혹은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최전방노동자 (frontline worker) (OECDa) ‘경제활동’의 유지에 핵심적인 산업(식품 가공업, 배달업,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핵심노동자(key worker)(OECDb)	보건의료 종사자, 점원, 식품가공 종사자, 건물 관리인, 농업 종사자, 트럭 기사 등(OECDa) 고속권(의사 혹은 의료 연구자)부터 저속권(슈퍼마켓 종업원 혹은 배달 노동자) 직군까지 포함(OECDb)
국제노동기구 (ILO)	감염 국면의 최전방(frontline)에서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 노동을 지속하는 노동자(ILO, 2020)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운수 및 교통, 농업,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등의 직종. 가장 위험에 노출된 분야로,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주목(간호사, 의사, 시설 관련 업무, 사회복지 사업, 요양과 돌봄,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빨래, 청소 등)
국제 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COVID-19 감염병 시기동안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Amnesty International, 2020), 보건의료 및 필수노동자(Health and essential worker)를 지칭함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식료품점,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 + 보건의료 노동자(의사, 간호사, 병원 청소노동자, 구급차 운전기사, 병원 행정직원, 지역사회 혹은 다른 조건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 포함)
유럽연합 (EU)	3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세부 업종별 봉쇄 조치 적용 여부를 통해 필수적이지 않은(non-essential) 산업 (관광업, 숙박업, 외식업)과 완전히 필수적인(fully essential) 산업으로 구분 후, 완전히 필수적인 산업을 규정(Fana et al, 2020)	식품 및 제약 생산업, 수도전기 등의 공익적 업종(utilities), 운송업, 보건의료업, 전기통신업, 출판업 등 (완전히 필수적인 산업) + 금융업, 보험업, 정보기술 및 컴퓨터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업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산업) = 필수 직종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직종
미국	필수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필수노동자를 경제와 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에 중요한 노동자로 정의하고, 그 중 최전방노동자(frontline)는 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는 경우로 설명함(Blau and Meyerhofer, 2020) 먼저 필수산업을 정의 후, 해당 필수산업에 물리적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로 정의함(Brookings Institute, 2020)	보건의료, 통신, 정보기술, 국방, 식품 및 농경, 운수, 에너지, 공공행정 등 주요한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집단(필수노동자), 그 중에 최전방노동자로 보건의료 노동자, 식료품점 점원, 필수품 잡화점, 식품가공 및 생산 종사자, 경비원, 농업 종사자, 트럭 운전자 등이 해당(Blau and Meyerhofer, 2020) 공공분야, 헬스케어, 공중보건, 상업시설, 식료품과 농업 등의 산업 종사자 (Brookings Institute, 2020)
영국	영국의 법 <The Key Worker Living Programme>(2019년 종료)에 Key Worker에 대한 개념 및 범주가 설정, 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수노동자(최전방노동자) 개념 정립함. 즉, COVID-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UK Statute Law Database, 2020)	의료관계자, 교사, 경찰, 교도관 및 관련 스태프, 심리치료사, 정신상담사 등

* 출처: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연구(2021), 128~129쪽 참조

【참고 7】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0개	52개	156개	450개	1,231개
1.관리자	13.전문 서비스 관리직	133.보건 및 사회 복지 관련 관리자	1331.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13310.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3.간호사	2430.간호사	24301.전문간호사
3.사무종사자	39.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9.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3991.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39912.전화 상담원
4.서비스종사자	42.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1.요양 보호사
5.판매 종사자	52.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매장 판매 종사자	5214.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52141.매장 계산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농·축산 숙련직	613.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139.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61399.그 외 사육 관련 종사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9.기타 기능 관련직	799.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7991.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79913.방역원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7.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3.자동차 운전원	8732.버스 운전원	87321. 시내버스 운전원
9.단순노무 종사자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2.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쓰레기 수거원
A.군인	A0.군인	A09.기타 군인	A090.기타 군인	A0900.기타 군인

*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7.3.)

4. 유사제도와 비교

가.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s)

* 일부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1) 목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을 통해
 -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

관련 조문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적용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별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기능의 연속성 활동에 적용

* **예시** 다양한 위험 유형(태풍, 화재, 지진, 감염병, 사이버테러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직원 결원, 업무공간 사용 불가 등의 경우에 적용

관련 조문

제3조(정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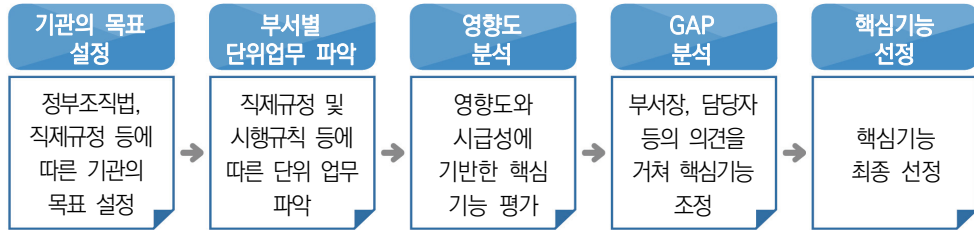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 금융기관, 통신업체, 물류·운송업체 등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 영역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필요

- 계획 수립 대상 기관 확정을 위한 실태조사(~'22.10월) 및 대상 기관 선정 이후 협의를 거쳐 고시 예정('22.12월, 행정안전부)

4)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대체 업무공간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재난 발생, 1차 대체 업무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국지적 재난 발생, 2차 대체 업무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광범위한 재난 발생 등을 기준으로 수립
- 기능연속성계획의 핵심기능이 최소 30일 이상은 운영·유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립
- 대체 업무공간은 위험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 과거 재난 발생지역 등)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12시간 이내 핵심기능수행 및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선정

〈기능연속성계획상 핵심기능 선정 절차〉



* GAP 분석: 핵심 기능이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시급하지 않은 업무 등 핵심 기능 중에서도 수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계획 수립 담당 부서와 핵심 기능 담당 부서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법

5)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과 ‘기능연속성계획’의 차이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지원계획을 마련
-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도 포함될 수 있음)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도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력 운영, 대체 업무공간 확보, 교육·훈련 등을 담은 계획임
-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수 인력이 겹칠 수 있으나
 -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 단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핵심기능(필수업무)를 정하고 업무방식 변경, 인력 재배치, 대체 업무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핵심기능별 최대허용 중단기간(MTPD), 복구목표 시간(RTO)을 마련하는 등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 최대허용중단기간(MTPD):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중단 기간(해당 업무 중단으로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기간)

* 복구목표시간(RTO): 업무중단 시 중단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시간으로 최대 허용중단기간 이하로 설정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단체가 재난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중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정하여 지원하는 계획임
-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은 병원내 의료진 감염에 따른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전환, 대체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의료기관별 중단 없는 진료업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의료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유형과 상황,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보호나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임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



* 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립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참고 8】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과 기능연속성계획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기능연속성계획
목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보호·지원	다양한 재난 발생 시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핵심 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수행
수립주체	고용노동부	재난관리책임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 포함) 및 민간업체
수립의무	재난상황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의무적 수립사항
적용범위	재난상황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함	-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별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핵심 기능의 연속성 활동에 적용 - 다양한 위험 유형을 고려하여 대규모 직원 결원, 업무공간 사용 불가 등의 경우에 적용
필수(핵심기능) 지정 기준	재난상황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를 정함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별 기능 중단에 따른 영향력과 업무재개의 시급성을 분석하여 전체업무 중 핵심기능(필수, 지원)을 선정 * 필수기능은 재난이 발생한 후라도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업무이며, 지원기능은 필수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업무임
근거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시행령 제29조의3
적용단위	전국 또는 특정지역 단위	기관 단위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기능연속성계획
계획 내용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립시기	재난상황 발생 이후	재난상황 발생 이전
수립주기	재난상황 발생 시	없음(수립 후 1년 단위 검토 후 수정·보완)
운영시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 발생 시
이행실태점검	관련규정 없음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 점검
평가반영	재난종료 후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이행실태 점검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반영

【참고 9】 의료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지침 발체 ('22.2.24.,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업무 설정 방법 예시: ※ BCP 가이드라인 참고

- 허용 가능한 중단시간*(MPTD: Maximum Period of Tolerable Disruption)을 산정하여 단계별 필수 업무·기능 설정

* 사람(직원, 환자, 방문자) 또는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비스 또는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시간(시간 또는 일)

필수적인 활동 클래스 0 MPTD: 허용 불가	높은 우선순위활동 클래스 A MPTD: 24시간	중간 우선순위활동 클래스 B MPTD: 48시간	낮은 우선순위활동 클래스 C MPTD: 72시간 이상
• 중단 불가* * 어떤 외부 위험 요인 등에도 업무 지속 유지 반드시 필요 • 즉시 수행 불가 시, 인명 손실 등 초래 • 국민 보건서비스등 심각한 영향	• 단시간 내에 업무 중단 가능 • 24시간 이내에 업무 재가동 불가 시 치료 중단 및 인프라 손실 발생	• 24~48시간 사이 중단 가능 업무 • 기간 내 업무 유지 곤란 시, 환자 상태 악화 및 인프라 손실 발생 가능	• 72시간 이상 지연 가능 업무 • 정상 업무 복구 및 추가 중단 완화를 위한 업무

대상자 선정절차

구분	관계기관	단계별 수행사항
1.분야 선정	복지부, 질병청 의료기관,	- 방역당국과 소관부처 사전 협의를 통한 의료분야 필수인력 격리기간 단축 합의 - 질병청 → 보건소로 해당 분야 통보(자치단체 지침 반영 등) - 소관부처 → 기관 통보
2.명단 작성	의료기관	- 해당 분야(의료)기관의 장은, 既 수립 BCP 중 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하여 기관 내부 결재 및 전자문서 보관

【참고 10】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업무연속성 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 발췌(* 22.2.25., 보건복지부)

■ 구성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성 - 팀별·개인별 역할 규정
② 핵심업무 정의 및 연속성계획 수립	- 반드시 지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업무를 선정 - 업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BCP 체계화 - 계획 실행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혼란 최소화
③ 가용자원 현황 파악 및 필요자원 구비	- 요양시설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현황 파악 - 코호트 격리시 공단·자치단체 추가 지원에 대한 사전 파악
④ 소통 체계 구축	- 요양시설 감염 비상대응 협의체 등을 통한 소통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⑤ 비상 상황별 시설운영 방안 마련	- 인력 부족 시 핵심업무 지속 방안 마련 - 필수 종사자 확진시 대체 인력 등 확보 방안 체계화
⑥ 회복 등 조치	- 기존 비상조직 체계를 복구활동 조직으로 전환 - 기타 BCP에 담겨야 할 사항 포함

※ 시설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름

■ 구체적인 내용

1. 핵심업무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중 필수 기능 선별 및 우선 순위 결정
- 입소자 및 종사자 감염 규모, 가용 자원 상황 등에 따라 비필수 업무부터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

* 업무 구분(예시)

- (필수) ①건강 및 간호관리, ②신체활동 지원, ③급식, ④시설환경 관리
- (비필수) ①기능회복 훈련, ②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2. 가용자원 파악 및 필요자원 비축

-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 예산, 방역 물품* 등을 파악하여 핵심업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체온계, 소독제, 진단검사키트 등

-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 단위 소모량을 파악하여 각 시설별 필요 비축량을 설정하여 관리

3. 단계별 기관 자체 비상 인력 운영계획 수립

-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격리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핵심인력 업무 진행 계획 등 사전 마련

- 시설 내 기존 인력 활용 및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등 계획 수립

* 3단계 인력활용 방안(시설자체)의 경우 1~2단계로 파견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임

- 종사자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대비 1, 2차 직무 대행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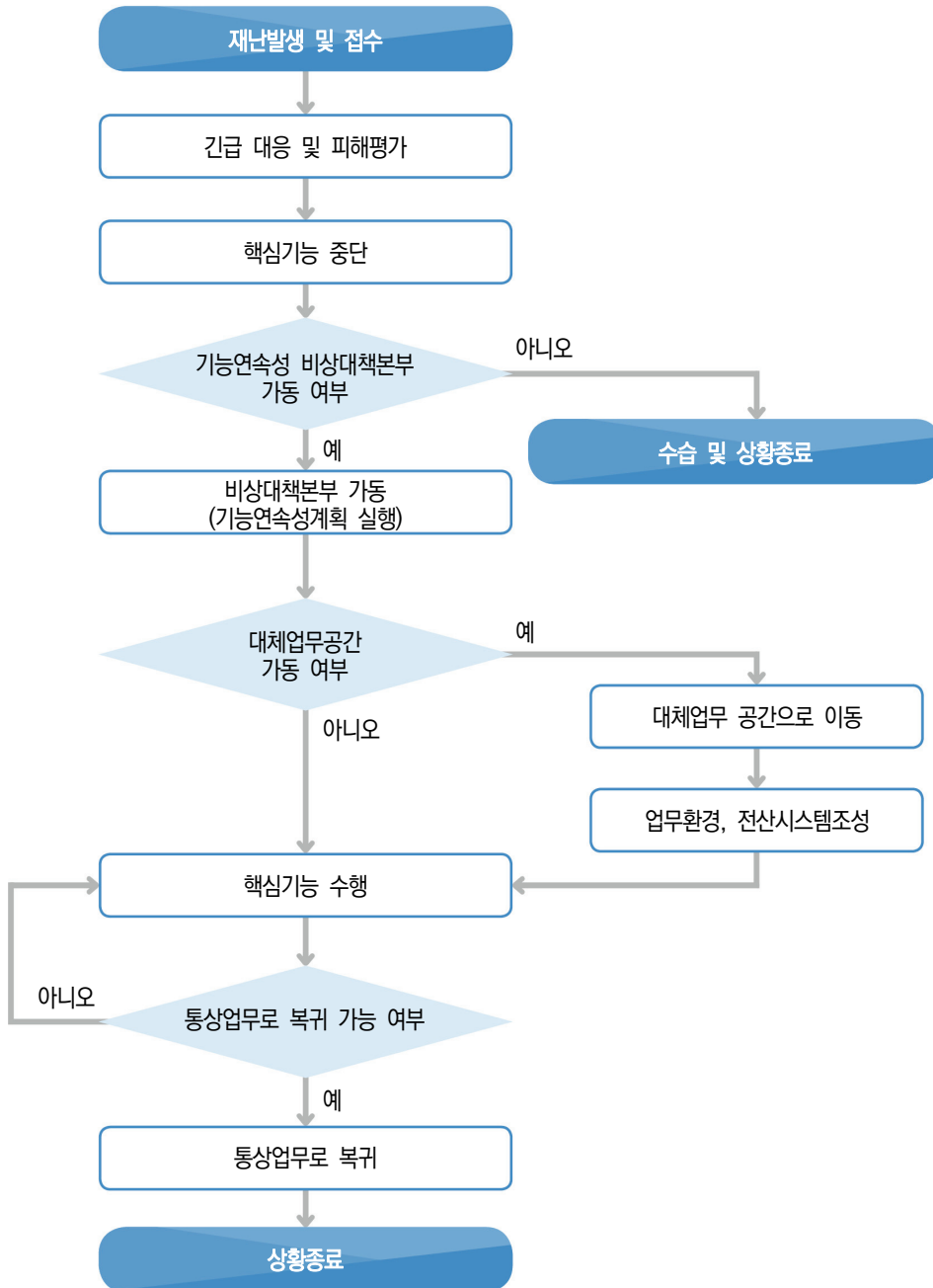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시설내 종사자 현황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제도를 우선 활용 후 필요 시 2단계 조치

■ 실행 시기

- 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폭증하여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점

* 방역당국의 작동 요청시, 혹은 시설 내 입소자·종사자 다수 감염 등으로 정상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 11】 기능연속성 실행 절차



【참고 1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삭제 <2019. 8. 27.> 4. 도로터널 사고 5. 삭제 <2019. 8. 27.>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도시철도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운영 한다.

【참고 13】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 관련)[별표 1의2]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국토안전관리원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물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67. 삭제 <2020. 6. 2.>
68. 삭제 <2020. 6. 2.>
69. 삭제 <2020. 6. 2.>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삭제 <2020. 6. 2.>
90. 삭제 <2020. 6. 2.>
91. 삭제 <2020. 6. 2.>
92. 삭제 <2020. 6. 2.>
93. 삭제 <2020. 6. 2.>
94. 삭제 <2020. 6. 2.>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남서울경전철
103.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 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재난안전법」상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1) 목적

-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도의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마련하여 핵심기능 연속성 확보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이란 : ①보호목표 및 대상 범위 설정, ②위험평가, ③중점위험관리전략 및 재난관리대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핵심기반의 핵심기능 연속성 확보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계획을 포함

2) 용어정의

-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

3) 법적근거

관련 조문

제3조(정의)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 1. 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 문화재, 공동구 등을 관리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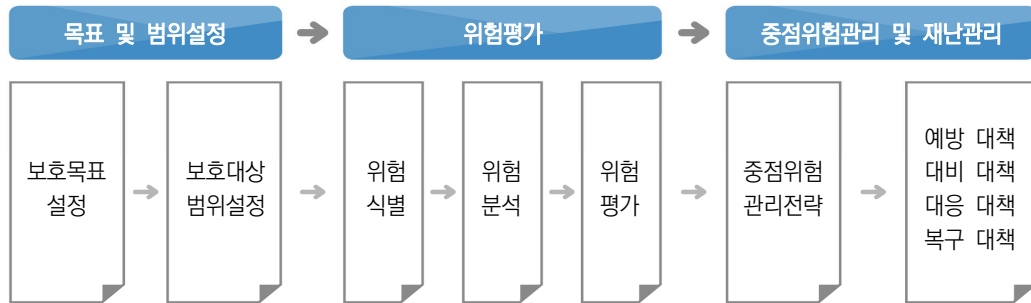
- (주관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식용수	정부중요시설	공동구	문화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 (관리기관) 141개 관리기관

- (지정시설) 355개 지정시설

5) 보호계획 수립절차



❖ 보호목표에 따라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및 재난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수립

6)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차이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는 계획임
-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된 시설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가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획임
-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필수인력이 겹칠 수 있으나
 -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은 재난시에 국가핵심기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시설, 설비, 인력, 자원, 업무, 정보시스템 등)에 보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단체가 재난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중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정하여 지원하는 계획임

●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는 감염병이라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국가행정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의 중단없는 수행을 위해 국가핵심기반 운영인력 및 지원인력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대체인력 충원 및 양성방안 등이 포함 되는 반면,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국가핵심기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유형과 상황,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나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필수업무 및 종사자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호·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임

【참고 14】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목적	필수업무 지정을 통한 사회기능유지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통한 정부 등 핵심기능 유지
수립주체	고용노동부	국가핵심기반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
적용범위	재난상황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
지정주체	지원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립시기	재난상황 발생 이후	재난상황 발생 이전
수립주기	재난상황 발생 시	매년 수립(보완 포함)
근거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1조	「재난안전법」 제10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계획 내용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목표 및 대상 범위 설정 - 위험평가 - 중점위험관리전략 및 재난관리대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핵심기반의 핵심 기능 연속성 확보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계획을 포함
운영시기	재난상황 발생 시	연중 계획 수립 및 시행

【참고 15】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분야별	지정기준
에너지	전력·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공급시설과 비축시설
정보통신	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황 감시시설 국가행정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	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통·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체계
보건의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装置)가 집중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매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정부중요시설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동구

다.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1) 목적

- 철도·전기·수도·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는 보장하되,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유지업무는 노사간 협정을 통해 일정수준 유지토록 하는 제도

2) 개념

-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임

3) 근거

관련 조문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4)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노동조합법 시행령」 별표1)
1	철도·도시철도사업의 업무(운전, 관제, 유지관리 등)
2	항공운수사업의 업무(수속, 보안검색, 조종, 객실승무 등)
3	수도사업의 업무(취수, 정수 등)
4	전기사업의 업무(발전설비 운전·정비, 송전·변전·배전 등)
5	가스사업의 업무(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 정비 등)
6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의 업무(인수, 제조, 저장, 공급, 시설 정비 등)
7	병원사업의 업무(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8	혈액공급사업의 업무(채혈, 혈액검사, 혈액수송 등)
9	한국은행사업의 업무(은행권 발행, 금융기관 대출 등)
10	통신사업의 업무(기간망 및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우편법」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등)

5) ‘필수업무’와 ‘필수유지업무’의 차이

-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의 유형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필수업무를 지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시에도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미체결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하게 되며,
 - 통상적으로 단체교섭 전에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이 포함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겹칠 수 있으나,

-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시에도 업무의 정지·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력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반면,
 - 필수업무는 해당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중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사후적으로 정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이 포함되는데, 이들 업무 중에서 철도차량 운전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고 화물운송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반면, 필수업무의 경우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화물운송업무가 필수업무로 지정되고 종사자 보호·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참고 16】 필수업무와 필수유지업무

구분	필수업무	필수유지업무
목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보호·지원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보장과 쟁의 행위 발생시 공중의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일정수준 유지
지정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간 자율로 정함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시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
지정범위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정함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제1항에 정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정함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
대상자 (종사자) 지정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정함	노사 간 정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에 따라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 정함
방식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지정시기	사후적 지정	사전적 체결
운영시기	재난상황 발생 시	쟁의행위(파업시) 발생시
운영기간	해당 재난에 한시적으로 적용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노사 간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
위반 시 효과	관련규정 없음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17】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2.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다. 항공기 조종 업무
- 라. 객실승무 업무
-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Depot Maintenance, 대규모 정비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여 수행하는 최상위 정비 단계)는 제외한다] 업무
-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한다)을 위한 업무

3.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4.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5.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6.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7.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 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8.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9. 한국은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한국은행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10.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참고 18】 필수유지업무와 비(非)필수유지업무(예시)

구분	필수유지업무	비(非)필수유지업무
철도·도시철도	운전, 관제(운전취급 포함), 전기·신호·통신, 선로 점검·보수 등	화물운송, 승무·역무(매표·안내)·전산·중장비·설비관리(역사·환기·배수 시설 등) 등
항 공	탑승수속, 보안검색, 조정·객실승무·일상정비, 항행안전시설 운영, 관제 등	예약·발권, 기내식·기용품 생산 및 탑재, 창정비, 운항 스케줄 관리, 객실청소 등
수 도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계측·제어설비 운영 등	민원(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순회점검, 상수원 오염물질 유압순찰, 댐관리, 건설, 행정관리·지원 등
전 기	- 발전설비의 운전·점검 및 정비,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 운영 -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 전력 공급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등	- 발전소의 업무 중 건설, 행정관리 및 지원 - 송변전 및 배전업무 중 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전산업무, 영업·민원 등 - 전력거래소 업무 중 전력시장 운영, 전력수급계획운영 등
가 스	천연가스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등	기획·지원·건설·연구개발 등
석유정제·공급	석유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등	석유화학공정, 기획·지원·마케팅·연구개발 등
병 원	응급의료, 증 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등	원무, 행정, 시설관리, 일반 환자급식, 외래진료, 입원진료, 보조진료(물리치료 등) 등
혈액공급	채혈·검사·제재·수송	헌혈기획(헌혈자 모집·홍보) 등 지원업무
통 신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통신장비의 신고접수 및 수리 - 기본 우편업무, 부가 우편업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 내부전산망 업무, 가입자의 가입·이전업무, 기타 경영지원, 기술연구 등 - 등기우편, 보험취급, 우체국 쇼핑, 전자우편 등

5. 코로나 관련 해외대응 사례

- 해외 각국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⁴⁾

미 국

- ‘지역 집행-주 관리-연방 지원’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는 핵심종사자 리스트 발표 및 공공·민간 분야 대상 지원기금 마련 추진*

* (CARES Act, 20.3월)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개인, 자영업자, 기업, 비영리단체, 주정부 등 대상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 (HEROES Act,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종료되어 폐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에 대한 추가 지원안 마련

** 뉴욕의 경우 「히어로즈 액트-뉴욕 건강 및 필수권리법(New York Health and Essential Rights Act(NY HERO Act)」이 2021.5.5. 발효되어 코로나19 등 공기전파 감염병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새로운 직장 건강 및 안전보호 의무화

- 연방 지원정책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루이지애나 등 3개 주는 연방 CARE act 기금을 활용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위험 부담금 지급
 - 다른 몇몇 주는 연방구호기금을 사용하여 긴급구조원, 보건 관련 간병인과 같은 더 좁은 범위의 최전방 필수 근로자에게 위험 급여 제공
 - 미국의 주정부별 및 연방정부별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임금 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1회성 지급으로 이루어짐

캐나다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대상 지원 정책, 돌봄 노동자 대상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긴급 임금보조정책, 기업 대상 긴급대출제도 등 시행

4) 이승윤외4,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수립에 관한연구」, 2021, 오윤미, “대만의 코로나19사태 대응과 시사점”,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계현·김진숙·이정찬·문성제·지성인·임선미·박정훈,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태조사”, 의료정책포럼, 2021.8

- 코로나19 관련 10개 필수업무 분야* 발표(지침), 필수노동자 지원프로그램** (EWSP; 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을 통해 이들 중 저임금인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소득지원 실시

* 에너지·발전, 정보통신, 금융, 보건, 음식 관련, 수자원관리, 교통, 보안, 정부업무, 제조업 등

** ▲요건: (시간) 6주간 190시간 필수업무 종사, (소득) 월 3,500달러(한화 약 310만원) ▲지원수준: 시간-소득에 따라 600~1500달러(한화 약 53~133만원) 지원(종사시간-소득이 클수록 지원금 수준이 높아지는 구조)

- 필수노동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에서 세부적인 자격범위를 결정하고 지원범위를 설정

- 채용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가 25% 보조하는 형태

영 국

- 코로나19 관련 8개 필수업무* 발표(지침), 종사자 자녀에 대한 학교 등 대면교육 허용, 백신 우선접종 등 우대정책 시행

* 보건·사회복지, 교육·보육, 핵심 공공서비스, 정부 행정부문, 식료품등 생필품, 공공안전·국가보안, 교통·항공, 가스·전기·수도 등

- 일부 지역에서 돌봄 또는 보건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액 수당 지급

* (웨일즈)돌봄 종사자, (스코틀랜드)돌봄·보건 종사자 대상, 1인당 500파운드(한화 약 78만원)의 일회성 수당 지급

-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지원책을 실시

- 코로나19 고용유지대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신설하여 비자발적 휴직자(furloughed employees)에 대해 1인당 최대 2,5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임금의 80%를 지원

- 자영업자에게도 같은 한도 내에서 수입의 80%를 지원

대 만

-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맞춰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 감염병 예방 및 치료는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관련 종사자 포함)에게 보조금 또는 수당 지급
 - 감염병 관리과정에서의 상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추가 보조금을 지급
 - 검역으로 인해 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세금우대 조치를 통해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추진
 -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000억 NTD의 대출한도를 마련해 대출금리 인하, 우대보증 제공 및 중소기업 우대 특별대출 제공 등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및 대출이자 보조, 영업세액의 실사 결정 및 결손액 공제 등의 지원
- [개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는 융자 및 조세 측면의 특별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현금)
 -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기한 연장 ▲기타 개인대출 원금 혹은 이자 납부기한 연장 ▲주택대출금리 인하(9월 30일까지) ▲1만 NTD 이내의 소비성 대출 관련 금리 인하 등
 - 또한 ▲2019년 소득세 정산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 정산 1차 환급분 조기 처리 ▲실제 영업 매출액에 근거한 영업세액 산정과 납세 면제 등 세금 납부 관련 혜택 지원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매달 1인당 1,500NTD의 생활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약자우선 및 중복수령 불가’ 원칙하에 생활보조금을 1개월 1만 NTD씩 총 3개월분을 일괄 지급

뉴질랜드

- 뉴질랜드 근로소득청은 사업체 고용인당 임금지원정책(COVID-19 Wage Subsidy)으로 국가보상 조치를 통해 필수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 원래받던 임금의 80~100%(주 20시간 이상 전일 근무자 - 주당 585.8 뉴질랜드 달러,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자-주당 350뉴질랜드 달러를 최대 12주 동안 근무회사에 지급, 단독 자영업자에게도 지급)까지 보조금 지원
 - 단, 모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매출 30% 감소, 뉴질랜드 내 합법적 사업장, 경제적 충격 완화 목적 등)에 모두 해당되는 회사에게만 지원
- 뉴질랜드는 2020년 12월 15일, 2021년 여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 계획 발표
 - 이 시기에 경보 3~4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임금보조금 (Resurgence SupportPayment) 지원
 - 단기 결근수당(Short-Term Absence Payment)으로 고용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직원이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50뉴질랜드 달러 지원
 - 실직자 소득 구제 정책(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실시
 - * 2020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새 직장을 찾거나 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받는 동안 지원금 지원

스웨덴

-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대책, 공공부문의 사업보조금 및 대출, 민간 대출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
 -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병가급여의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자영업자에게도 최소 1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표준화된 병가급여 제공
- 감염 격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정규 급여의 약 80%를 보장
-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하루 최대 804 크로나(한화 약 10만 6,000원)를 지급
- 스웨덴의 육아휴직법 상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유급휴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휴교가 발생할 시 급여의 약 9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을 허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의 경우, 실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고용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기금 또한 증가
 - 실업 급여는 최초 100일 동안 하루에 1,200 크로나(한화 약 16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0일 이후는 1,000크로나(한화 약 1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창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보조금을 받게 됨
- 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부의 대출 보증이 제안되었고, 항공사의 경우 2020년 기준, 최대 50억 크로나(한화 약 6,600억원)에 이르는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
 - 또한 취약 업종의 임대료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료 감면정책, 전년도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보이는 기업에게 고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시행

싱가포르

Temporary Relief Fund

- COVID-19로 소득의 상당 부분인 일자리를 잃은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를 돕기 위한 일회성 중간지원 제도
 - 2020년 4월에만 실시
 - 대상은 16세 이상, 코로나로 인해 실업하였거나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이며 지원 금액은 1회 500달러임

COVID-19 Support Grant

-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가 현재 감원이나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거나, 비자발적인 무급휴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그 결과 현재 최소 3개월 연속 30%의 월급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
 - 20년 5월 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
 - 지원 금액은 기준에 따라 3개월간 매달 500~800달러를 제공

COVID-19 Recovery Grant

- COVID-19로 인해 현재 비자발적인 실직, 무급휴가 또는 소득 손실을 겪고 있는 중하위 가구의 근로자에게 일시적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21년 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 자격은 21세 이상, 19년 1월부터 20년 12월 사이에 최소 6개월 근무한 자이며 타 지원제도를 받는 자는 제외
 - 지원 금액은 기준에 따라 3개월간 매달 500~700달러 제공

The Courage Fund

- SARS 사태 때 처음 설립되어 기부금을 통해 운영이 되며 저소득가구, 코로나 감염자, 의료종사자 등에게 제공
 - 지원금액은 최대 1,000달러

6. 관련법령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종사자법」

-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법 제2조제2호)
-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법 제2조제3호)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법 제8조)
-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법 제11조)

나. 「재난안전법」

- 재난의 개념에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에너지·통신 등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정의함(법 제3조제1호)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둠(법 제14조)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22조 내지 제2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법 제26조, 제26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법 제36조)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 가능(법 제60조, 제61조)

【참고 19】「필수업무종사자법」 주요내용

- ① (정의)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법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특고+자영자 포함)
- ② (위원회)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수립 등 심의(법 제6조)
 - * ▲ 구성: (위원장) 고용부 장관, (위원) ①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실장급), ②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장협의회 및 ③노·사단체 등 추천인사, ④전문가 등 15인 이내
 - ▲ 회의소집: 대규모 재난, 위원 1/3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 ▲ 구성: (위원장) 고용부 국장급, (위원) ①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장급), ②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및 ③노·사단체 등 추천인사, ④전문가 등 30인 이내 ▲ 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③ (실태조사) 고용부 장관은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법 제12조)
 - * 위탁 수행 가능하며, 지원위원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
- ④ (지원계획 수립) 고용부 장관은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법 제11조)
 - *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재난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가능(법 제9·10조)
 - * 지역위원회 설치,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⑤ (이행평가) 상황 종료 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법 제12·14조)

【참고 20】「필수업무종사자법」 입법 추진 경과

-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보건, 돌봄, 택배·배달 등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 제정안 5건 발의

* 민형배('20.11.5.)·김영배(11.23.)·송옥주(12.31.)·이해식('21.1.13.)·임종성(3.5.) 의원안 제안

쟁 점	민형배 의원안	김영배·이해식 의원안	송옥주·임종성 의원안
적용 대상 (공통: 필수분야 종사자)	대면업무, 근기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필수업무 등 지정 시기	평시 지정 (대통령령)	평시 지정 (대통령령+위원회 의결)	재난발생 시 (위원회 의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상시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정기·상시 (기본계획 3년, 시행계획 1년)	재난발생 시
위원회 구성 (위원장/종사자 참여 여부)	고용부 차관/ 대통령령 위임	고용부 장관/ 필수노동자 대표, 전국단위 노조 등	고용부 장관/ 대통령령 위임
협회·공제사업	-	협회 지정·공제사업 지원(주체:고용부장관)	-

- 「필수업무종사자법」 관련 공청회 개최(2021.3.12.)
- 「필수업무종사자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2021.3.24.) → 국회 본회의 통과(2021.4.29.) → 2021년 5월 18일 법률 제18182호로 공포
-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2021.11.19.)

【참고 21】 「재난안전기본법」 주요 내용

- ❶ **(목적)** 재난 및 안전 관리체제의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법 제1조)
- ❷ **(정의)**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구분(법 제3조제1호)
- ❸ **(안전관리기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법 제9~13조)
- 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재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소집(법 제14~17조의3)
- ❺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법 제22조)
- ❻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법 제33조의2)
- ❼ **(재난사태 선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법 제36조)
- ❽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법 제60조)
- ❾ **(종사자 등 치료·보상)**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명령을 받거나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부상, 장비 등의 고장·파손 등(법 제65조)



추진체계

1. 총괄
2. 고용노동부
3. 지방자치단체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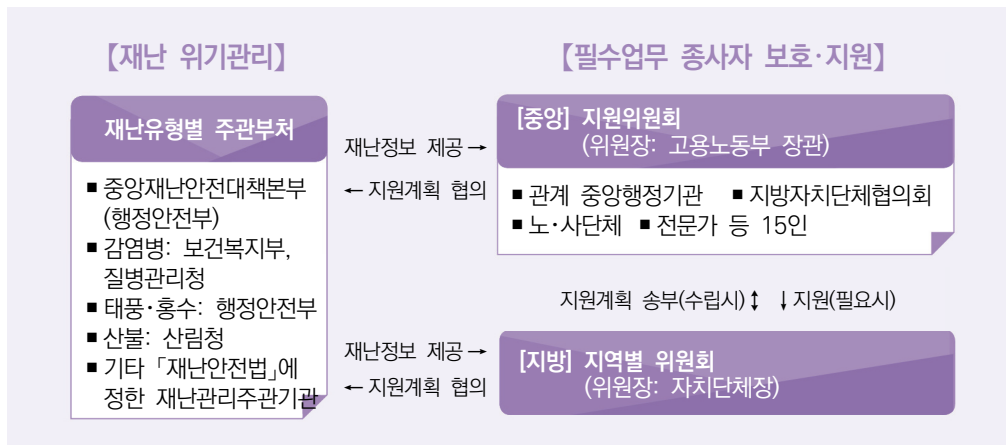


Chapter 02 추진체계

1. 총괄

■ 중앙 - 지방 및 재난위기관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재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6조 및 제9조, 시행령 제5조 등



■ 기구별 임무 및 역할

-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있어 재난유형, 발생지역, 규모 등에 따라 코로나19 처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풍수해·태풍 등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지원계획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유형별 주관부처-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

2. 고용노동부

가. 지원위원회

■ (개요)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6조~11조 및 시행령 제2조

■ (위원회 성격)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가 아닌,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

■ (심의 사항) 법 제7조 각 호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① 필수업무 및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③ 실태조사,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법 제8조제3항

①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 국무총리*

*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긴박한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 재원 투입 등의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대규모 재난이 장기화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보호·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 중(행안부장관 → 국무총리, 「재난안전법」 제14조)

② 위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관련 조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노·사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전문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무총리의 위원장 권한행사 시 위원 변경 〉

구분	(위원장) 고용부장관	(위원장)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이 추천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실장급)	기관장(장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협의회회의 장이 추천하는 인사	자치단체장협의회회의 장
노·사단체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단체의 장
전문가	전문성·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성·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해임·해촉: 다음 각 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을 해임·해촉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의 변경(시행령 제2조제2항)

-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면 됨

⑤ 간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국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소집요건) 법 제8조제4항

-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실무위원회

■ (개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을 사전협의 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 (근거) 「필수업무종사자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7조

■ (심의사항) 시행령 제7조제2항

- ① 지원위원회 안전에 관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②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 ③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7조

- ① 위원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국장급)
- ② 위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

관련 조문

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 (노·사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전문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❸ 간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

■ (소집요건 등 운영)

❶ 소집 요건: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7조제5항)

❷ 기타: 지원위원회의 운영과 동일

* 개의 및 의결 요건, 참석 및 자료제출 요청, 해임·해촉, 수당 등

3. 지방자치단체

- (취지)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의 규모나 범위,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례 등을 통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차원에서의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임
- (개요)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근거) 「필수업무종사자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제4항

관련 조문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의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9조 각호)

- 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②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③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구성) 법 제10조제1항

- ① 위원장: 시·도지사(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시·군·구위원회)
 ② 위원: 위원구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전문영역에 있어 지역내 인적 인프라 한정적, 위원회간 인적구성 유사성 등 고려 필요

관련 조문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잘못된 ◇◇시 사례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회의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집요건) 법 제10조제2항

- 해당 지역에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운영 등) 법 제1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협의회·심의회 등 명칭 불문)는 지방행정기관 중 자문기관에 해당되며,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지방의회의 견제 및 통제하에) 설치
- 위원회 설치 시 동 위원회의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참고 1】 중앙·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체계

주체	추진단계	중앙	지방(광역·기초)
위원회	위원회 구성	고용노동장관(위원장) 등 정부 대표, 자치단체 대표, 전문가 등 15명 內	자치단체장(위원장) 외 구성은 조례로 위임
	위원회 소집	대규모 재난 발생,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등	대규모 재난(또는 국지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준하는 재난) 발생,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등
	심의·의결	필수업무 지정, 보호·지원 대상 종사자의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필수업무 지정, 보호·지원 대상 종사자의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행정부	계획수립	고용노동부장관 수립 → 위원회 의결 (종사자 안전·건강 보호·지원, 공공 서비스 우선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의 책무는 법률에 규정,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따라 실시 가능
	자치단체 지원	필요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가능	
	평가	대규모 재난 종료시, 종사자 처우·노동환경 등 조사 및 평가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1) 목적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

2) 근거

-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관련 조문

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28호)」

3) 운영기간

- 중앙대책본부는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정함(훈령 제6조)

관련 조문

훈령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복구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4) 중앙대책본부 설치여부 판단

- 중앙대책본부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판단 (훈령 제8조)

관련 조문

훈령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중앙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재난별 중앙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 여부
5.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중앙대책본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한 경우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자치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재난안전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의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3호)

관련 조문

재난안전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 규모 및 보고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
2. ~ 12. (생략)
13.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
2. ~ 23. (생략)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하고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 지원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지원위원회 개최여부는 재난상황 발생시 중앙대책본부 설치여부와 재난상황 정보를 행정안전부 등과 수시로 공유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관련 조문

필수업무종사자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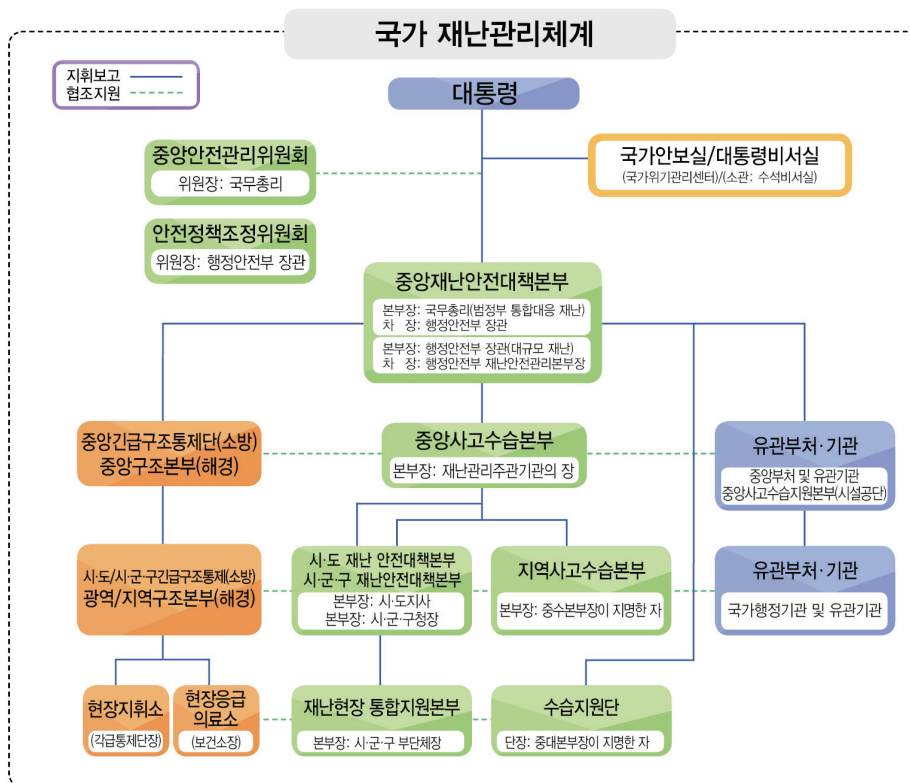
1 개요

- (정의) 국가위기관리* 활동의 하나로,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지휘, 보고, 협력관계를 체계화한 것

* 안보 및 재난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통제하는 제반 활동
: 징후감시 → 위기평가 →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 대비대응 등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

- (관리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중대본과 자치단체에서 소관하는 지대본, 각 부처에서 소관 재난유형을 관리하는 중수본 등 다양한 재난관리기구가 존재



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20.6. 행정안전부)

② 기구별 임무와 역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 대규모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및 필요조치 이행 (제14조)
- 수습본부·지역대책본부 지휘, 기관경고권, 안전감찰관계 (제15조, 77조)
-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건의 (제36조, 60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대본)

- 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제16조)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제37~46조)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지본)

-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16조제3항)
-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15의2)
- * 수습본부장의 장은 소관 재난발생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초동조치 및 지휘
- * 수습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요청

●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수본)

-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둘수 있음 (제15조의2)
- *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이 지명

● 긴급구조통제단 (긴통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제49조)

●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제52조)

○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

③ 재난위기관리 절차

- (징후감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위기징후 목록을 바탕으로 위기 징후의 활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국가안보실 및 행정안전부에 제공
- (위기평가(상황판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분야 위기징후 포착 또는 위기 발생 예상시, 그 위협 또는 위험수준 평가를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국내외여론, 정부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위기경보) 위기징후 식별 및 위기에상시 위험수준과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 그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경고하는 것으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
 -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상 위기경보는 기본적으로 위기발생 이전에 발령
- (대비·대응) 위기징후 및 위기경보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활동
 - 재난관리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분류

재난관리단계	주요내용
예 방	위기로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대 비	위기상황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대 응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복 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 기능별로 총괄, 생활안전, 시설복구, 수색·구조, 자원봉사 등 다양한 기능 수행
(재난안전법 제34조의4제1항,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기능 (Function)	주요내용
① 재난관리총괄	• 비상근무체계 확립 / 상황보고 관리 • 재난대응 조직 구성 및 활동 • 전반적인 재난대응 활동
② 긴급생활 안전지원	• 재난발생 지역 세제, 금융지원, 전기 통신료 감면 • 정부차원의 이재민 보호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통신지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④ 시설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조치 활동
⑤ 에너지기능복구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⑥ 재난자원지원	•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 장비, 인원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⑦ 교통대책	•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 육상 (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재난피해 지역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 •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 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 처리지원 • 재난현장 쓰레기 수거, 처리지원
⑩ 자원봉사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⑪ 사회질서유지	• 재난현장 통행제한 • 대피명령
⑫ 수색, 구조·구급	• 사망, 실종자 수색 • 인명구조, 응급처리, 응급운송
⑬ 재난수습홍보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취재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5. 지원(실무)위원회의 전문성 확대

가. 배경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제한(각 15명, 30명 이내)으로 특정 재난상황에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에서 한계가 생길 수 있음

나. 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나, 재난상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필수업무와 종사자가 분포될 수 있어, 위원회 위원만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특정 재난에 대한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할 경우
 - 부정확한 정보전달과 그에 따른 문제인식으로 인해 유효적절한 지원계획 마련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음
- * 예를 들어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 경우 다른 재난에 대해 전문성 발휘하기 곤란
- 따라서, 다양하게 광범위하고 탄력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

다. 근거

관련 조문

법 제11조제5항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회의)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운영방법

- 지원(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유형 및 규모, 상황 등을 고려, 위촉된 위원 외에 관련분야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방식(회의참석, 서면 의견제출 등)으로 의견수렴
 - (노사단체) 위원들과 협의, 관련 종사자·노동조합, 사용자·사용자 단체 등 회의참석 조치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이나 관련기관 회의참석 조치
 - (전문가) 해당 전문가 회의참석 조치

마. 기대효과

-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타당성이 담보된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대한 신뢰 제고



03

실태조사

1. 개요
2. 실태조사 항목
3. 조사방식 및 범위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5. 실태조사 후 조치



1. 개요

가. 목적

- 재난 발생의 다양성,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재난 시 신속하게 필수 업무와 종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발생시 지원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2조제1항(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 포문

법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주체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자치단체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조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실태조사 항목

가.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 실태조사에 있어 시·공간적 제약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
 - (감염병) 지속기간과 피해규모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 * '15년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 지속기간(217일)과 격리자(16,693명) 발생
 - (구제역) 매년 발생하며, 지역 발생 비중이 높고 지속기간은 대부분 30일 미만임
 - (조류인플루엔자) 매년 발생하며, 전국적 발생 비중이 높고 지속기간도 100일 이상이 대부분임
 - (태풍) 전국적 발생 비중이 높으나 지속기간 자체는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3~10일)
 - (대형산불) 매년 발생하며 특정지역 발생(강원, 경북) 비중이 매우 높고, 지속기간 자체도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남(2~4일)
 - * '22.3월 발생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의 산불은 약 9일 213시간 동안 발생

나. 필요한 업무의 현황

- 과거 재난사례를 고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필수업무’와 본연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필수업무’로 구분하여 조사
 -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서 간접적인 지원인력 조사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일반 필수업무(예시)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서 돌봄, 환경미화, 운송 등 비대면 업무가 일반 필수업무. 특정 재난이 국민생명 보호나 사회기능 유지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간접업무 지정 가능

■ 분야별 필수업무(예시)

- 감염병: 환자격리, 역학조사, 진단검사, 검역, 방역물자, 예방접종, 시설격리 등
- 구제역: 백신접종, 검역, 역학조사, 살처분 등
- 산불: 공중(헬기, 헬기급수지원), 지상(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보급지원(진화장비, 급식, 의료)

다. 종사자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 모든 재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용안정, 건강보호, 산업안전 등 종사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부문 조사

【지원위원회(‘22.2.15) 전문가 의견

- 종사자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살펴서 우리 사회에 필수기능 중 약한 고리를 찾는 실태조사
- 각 분야에서 종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과 감염병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환경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
- 필수노동자들은 그 재난의 필수노동자가 아니고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접근

- (평상시) 종사자들의 평상시 근무시간, 임금수준, 근무환경, 고용형태 등
→ (재난발생시) 노동강도 변화, 사고위험 노출 정도, 건강문제 등 재난발생으로 변화되는 근무환경, 새로 추가되는 업무·평소 업무보다 증가하는 업무, 추가로 필요한 인력규모와 확보방안, 재난종료 후 인력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사 선행연구 사례⁶⁾

- 영아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며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공포 수준
- 보육교사들은 영아 간의 접촉 최소화, 영아의 개별 놀이 등을 강조하는 방역 지침이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환경과 맞지 않고, 어린이집의 협소한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준수 하는 것에 지친 모습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유아와 학부모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한계
- 다양한 집기와 교재교구를 수시로 소독·세척해야 하는 책임은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짐
⇒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 필요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선행연구 사례⁷⁾

- 부가된 업무는 장기화되고 가중됨: ①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종사자들은 그만큼의 업무량과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 ②백신접종이 있어서 1차, 2차 백신접종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기록하고 백신접종을 꺼리는 어르신들 관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 기저질환까지 알아내어 지속적인 관리, ③평소 하던 기본적인 관리의 업무도 비대면, 거리두기로 배가 되었고 여기에 관리라는 명목으로 하나, 하나씩 그 업무는 더 가중
- 노동관계법 관련 갈등: 노인일자리 특성상 매년 모집하고 계약하고 12월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사업임에도 퇴직금 문제로 고소·고발 등 다툼발생, 국가재난에 다른 휴업 권고에 대한 휴업수당 지침부재 등

산불진화 활동시 유해물질 노출평가 선행연구 사례⁸⁾

- 미세먼지의 경우 고농도로 방출되고 있어 호흡기의 건강영향에 대한 대비 필요
 - 소나무, 생엽, 생가지를 연소할 때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다른 2가지 경우보다 더 높은 농도로 발생 ⇒ 향후 산불 진화대원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기준을 정립하는 기초로 활용

6)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마주한 어려움”, 2021.11, 141-145면
 7) 이연주, “코로나19 시기, 노인일자리 실천현장경험: 대구·경북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과제를 중심으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며,” 노인복지연구 제76권 제4호, 2021, 56-57면, 60-61면
 8) 이병두외, “산불진화 활동시 유해물질 노출평가,” crisisonomy 제11권 제12호, 2015, 111-123면

가축 살처분 관련 종사자 정신건강 선행연구 사례⁹⁾

-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농민이나 공무원 등 관계자(외주용역을 주는 사례도 있음)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발생 ⇨ 살처분에 관여한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살처분 참여자의 피해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심리 치료·정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필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발생 선행연구 사례¹⁰⁾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
- 온라인쇼핑몰 26.1%, 음식서비스 분야 109.1%, 음식료품 분야 66.3% 거래량 증가 (2020.12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 플라스틱(포장재, 스티로폼 등)과 비닐폐기물 각각 15.6%, 11.1% 증가
- 코로나가 발생한 2020.1월 이후 1년 동안 수거된 의료폐기물은 약 7,517톤으로 하루 평균 21톤이 수거되었고 이는 2015년 메르스 관련 의료폐기물 양인 275톤 대비 약 30배에 해당
- 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전 과정은 영세 민간업체 의존, 공공의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라.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파악을 통해,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추가적인 보완 필요 사항 발굴

* (현행)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감염병 매뉴얼상 고용노동부 역할) → (개정)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의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에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임무 및 역할 추가

9) 함태성,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2019, 537면

10) 윤정연외4,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폐기물의 발생현황, 관리 및 처리,” 대한환경공학회지 43권 제12호, 2021, 739-746면

마.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판단 예상지표 또는 목록 발굴

* **예시** 재난(감염병, 가축질병, 화학사고등)으로 대응 또는 복구를 위한 특별연장 근로시간 인가현황, 복구에 필요한 인력부족 발생 현황 등

- 「재난안전법*」상 ‘기능연속성계획’과 연계방안

* 제25조의2: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

* **예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정부청사 보안관리 및 서비스(미화, 시설관리) 제공 등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업무 연속성 계획(BCP) 수립·시행(내용: 직무대행자 지정, 일시적 교대근무, 청사운영시간 단축 등)

- 국가-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에 필요한 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과 고용노동부 간 재난정보 체계적인 공유 방안

*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 표준매뉴얼」 보완: (현행) 없음 → (개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 ⇒ 신속한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 과거 재난상황을 통해 중앙-자치단체간 협조·조정 필요사항

* **예시** 고용노동부장관과 자치단체의 지원계획에서 필수업무 범위, 종사자 범위, 지원수준 등이 상이할 경우 조정문제

* 중앙정부 자원 외에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유사한 지원을 할 경우 중복지급에 따른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

3. 조사방식 및 범위

가. 조사방식

-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
- 필수업무 종사자 의견수렴
 - 지원계획 수립 시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만큼, 사전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

* 법 제11조제5항: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나. 조사범위

-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해진 사항은 반드시 포함
- ①재난관리주관기관별 표준매뉴얼, ②과거 발생(해외사례 포함)사례 선행연구 분석(각 재난대응 평가자료 분석 포함), ③담당공무원(중앙·자치단체)·재난에 투입된 인력 면담(공공·민간), ④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코로나19관련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및 정책제언 선행연구 사례¹¹⁾

- (노동환경)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화된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코로나 이후 보상 없는 업무범위 확대, 새로운 산재위험 노출, 고용소득 불안정성 심화
- (정책제언)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부문별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도입 및 보완, 부분 실업인정 등 고용보험의 보장성 제고, 위험수당 및 방역물품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지원금 요건완화 등

| 코로나19관련 위험수당 지급사례¹²⁾

- 노동조합들은 식료품점 체인 크로거(Kroger)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수당(hazard pay)을 4월 초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풀타임 노동자들은 300달러(약 36만 원), 그리고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150달러(약 18만 원)를 받게 됨

11) 박고은외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1호, 2021, 739-746면

12) 세계노동소식, “미국, 전국적 체인 식료품점 노동자들, 위험수당 지급받아.”, 국제노동브리프, 2020.5월, 105면

4. 조사실시 및 조사결과의 활용

가. 조사실시

- (계획) 실무위원회 개최* →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연구용역 공고 등 연구 진행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안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실태조사 선정단계

-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조사 범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 '22년 실태조사: 감염병, 가축질병, 풍수해, 산불, 지진

- (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과거 발생사례 등을 기초로 재난유형별 발생가능성 정도(다빈도 재난 여부), 재난발생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 지리적 위치 등 시급성·위해성·형평성·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I 지원위원회('22.2.15) 전문가 의견

-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빈도 재난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 ⇨ 재난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

다. 긴급 실태조사 실시

- (요건) ①실태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②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 심의사항(법 제7조 각 호)

-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후적으로 서면심의 방법 등을 통해 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라. 조사결과와 활용

- 재난유형별 ①필수업무(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기능별 분류) 및 종사자 범위 구체화, ②평상시 대비 재난 규모·수준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적정 예상 소요인력 추계, ③평상시 미리 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고용·안전·처우 개선 등 보호·지원내용), ④재정조달*, 국가-자치단체 협력사항 등 지원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안 등

* **예시** 「복권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17조제5항: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능 → 추경 등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규모 예산소요 사업에 적절

* **예시** 제도 정비, 예산 확보(중앙) ↔ 응급복구, 질서 유지, 의료 지원 등 행·재정상 조치(자치단체)

5. 실태조사 후 조치

- (조사후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단계는 아니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조사보고서 작성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자체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함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제출 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면 함께 제출하면 됨

【참고】 실태조사 관련 「과업지시서」 작성예시

과업지시서(안)

1. 과제명: 산불재난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2. 연구목적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업무종사자법’, ’21.11.19.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지원계획 수립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법 제11조제5항)

- ’22.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산불 발생

- 산불이라는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물론 최소한의 일상 및 경제 활동이라는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산불진화 업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산불재난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근무환경, 처우 수준, 관련 정책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

* 시행령 제11조제1항(실태조사): •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주요 연구내용

①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산불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

② 필수업무 현황

- 산불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여 필수업무 지정에 활용

* (법 제2조2호)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필수업무 종사자현황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 (법 제2조3호)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불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반영

-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도출

- 산불진화 과정에서의 사고위험 및 예방조치,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보호 조치 등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실시

-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수준과 고용형태 등 고용안정성

●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해외사례 파악

- 해외 주요국가들의 제도연구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

4. 보고서 제출 시기

● 중간보고서 제출('22. 4. 22) → 최종 보고서 제출('22. 5. 30)

* 진화인력별 충분한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 충분하게 반영



04

지원계획 수립·시행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2. 상황모니터링
3. 지원위원회 소집
4. 지원계획 수립
5. 지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6.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협조



1. 정책환경 및 기본원칙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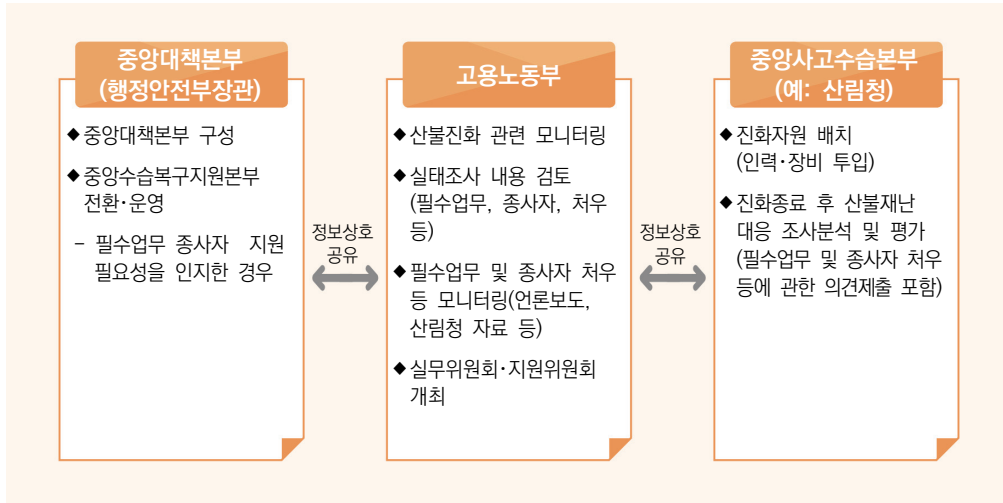
-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갈수록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고 그 영향의 범위 확대로 인하여 거의 모든 시스템에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까지 영향을 미침
- 재난의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이라는 특성과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불평등이 강조되고 있음

*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지만, 결코 각 집단에 끼치는 영향이 같지 않음

재난은 어떤 면에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지는 못한다. 재난은 모두가 서로를 끌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각 집단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고 각 집단이 대응할 방법도 엄청 다르기 때문에, 재난은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되는 계기가 된다, 광풍은 부자의 요트에 바람을 불어넣지만 가난한 자의 부실한 탈 것은 가라앉게 만든다. (존 C. 머터, 「재난 불평등」 중에서)

- 모든 재난에 대해 필수업무 및 종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 보호나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중단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지원
- ⇒ 따라서, 발생한 재난의 내용, 규모, 지속기간, 진행속도 등과 사회적·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수업무 지정과 종사자 보호·지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 모색

〈산불관련 지원계획 수립사례〉



나. 정책환경

- ❶ **유연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재난 발생 후 사후적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함
 - 대응해야 하는 재난의 위험성, 유형의 광범위성, 재난 발생시기·내용·규모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주기적인 기본계획 수립보다는 재난 발생 시 그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이 바람직함
- ❷ **예측곤란성:** 재난 발생시기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응의 어려움
 - 재난이 가져올 다양한 결과를 예상하는 작업에는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지원계획 마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 가령 경제적·사회적 영향,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 ❸ **다양성:** 재난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광범위할 수 있어 지원계획 등이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의 필수업무·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지원계획 등 차이, 자치단체별 재난의 규모나 범위, 재정상황, 자원사정 등에 따른 차이

다. 기본원칙

- ❶ 신속성: 필수업무 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호·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은 신속하게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평시에 관련 차질 없는 실태조사 및 국민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필요
- ❷ 타당성: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 재난의 직접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가 고려되어야 함
- ❸ 연계성: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영향이 전국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의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연계 대응이 필요함
- ❹ 한시성: 필수업무·필수업무 종사자 지정과 지원계획은 특정한 재난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므로 해당 재난에 한정됨

2. 상황모니터링

- 재난발생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유형·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 실태조사: 종사자의 범위,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대책본부 등과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관련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보호나 사회기능 유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 근무환경, 제도 개선 과제 등을 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대책본부(행정안전부장관)·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장)와 재난상황을 공유하면서 재난규모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예상되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 보호·지원과제 발굴

- 모니터링 방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작성한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참고하여 재난유형별 잠재적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는 물론, 재난대응에 따른 종사자의 노동강도 등 처우 변화, 이들의 업무중단 등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

〈주요 재난상황별 잠재적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예시〉

*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며 아래의 예시는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잠재적인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를 예측한 것이고,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구분	필수업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따른 범위 확장
감염병	역학조사, 예방접종, 격리 등 환자관리, 방역등	보건·의료 종사자, 역학조사·방역 담당 등	돌봄, 환경미화 등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상황발생
가축 전염병	역학조사, 예방접종, 격리·방역 등	가축방역요원, 살처분 인력 등	
태풍	피난, 피해복구 등	피해복구(중장비등), 전력설비 복구, 쓰레기 수거 인력 등	
홍수	피난, 피해복구 등	피해복구(중장비등), 전력설비 복구, 쓰레기 수거 인력 등	대규모 산사태 등 발생
산불	산불진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장비보급 등 간접지원 인력 등	
화학 사고	피난, 화학사고 영향조사, 피해복구 등	시설, 설비 안전성 검사, 피해복구, 화학물질 잔류조사 등 모니터링, 오염물질 수거·폐기 등	인근지역 주민 불안감 고조
지진	피난, 피해복구등 (통신, 시설, 에너지공급등)	피해복구(통신, 시설, 에너지공급 등)	사회불안 증가, 도시기능 마비, 경기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로 파급
대규모수질 오염	방제활동, 피해복구 등	원인조사, 방재조치, 긴급복구	취급수 중단이 장기화되어 생활·공업용수 공급 중단

참고 포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①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징후 포착 시는 위기징후와 관련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3. 지원위원회 소집

가. 소집 요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지원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나. 개의 및 의결 요건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15명 중 8명)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8명 중 5명)

다. 수당 등

- 위원회 출석, 검토의견 제출한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로서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경우는 제외

4. 지원계획 수립

가. 시기: 재난발생시

- 대응해야 하는 재난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재난 발생시기와 내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재난 발생시 그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판단

나. 근거법령: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1조

관련 조문

-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지원계획의 내용

- 재난유형,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가 정해지며,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재원조달 방법·규모 등도 다양하게 포함

코로나19 사례

〈필수업무 지정〉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주요 지원계획 내용〉

총괄	지원내용
① 필수분야 방역 강화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점검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②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③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④ 사회안전망 확대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분야별 맞춤	
① 보건·의료	① 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②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③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② 돌봄서비스	① 시설인력(3,127명), 보육교사(6천명) 등 인력 충원 ②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③ 종사자 보수 인상,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④ 공공(사회서비스원법)·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체계 개편
③ 운송서비스	① 버스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②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보험료부담 완화 ③ 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분야별 맞춤	
④ 환경미화	❶ 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❷ 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❸ 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⑤ 기타 업무	❶ (콜센터) 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산불관련 사례

〈필수업무 지정〉 산불진화업무

- 산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 등 위험수준도 매우 높음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헬기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주불 진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종사자와 달리 야간진화에도 참여하는 등 근로강도가 크므로 보호 및 지원 필요성 큼

〈주요 지원계획〉

추진과제	지원내용(안)
① 인력확충	❶ 특수진화대 단계적 확충
② 처우개선	❶ 임금등 처우개선 지속추진 ❷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③ 건강보호	❶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❷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
④ 진화장비 인프라 확충	❶ 진화장비 지속확충 추진

라. 지원계획 수립·시행 절차



* 자치단체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립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원계획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법 제11조제1항)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위원장: 근로기준정책관)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나,
 -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법 제12조제1항)
 -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법 제11조제5항)

마. 지원위원회 개최시기와 재난관리 위기경보 수준과의 관련성

- 지원위원회 개최에 있어 「재난안전법」상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와 재난관리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참고할 수 있으나, 지원위원회 소집 시기와 시기적 연계성이 높지 않음

〈재난위기단계와 지원위원회〉

위기 경보	위기 관리	위기관리 활동(예: 감염병 관련)	지원위원회
-	예방	■ 정부 대응조직 및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준비 점검 ■ 유관기관 상호협력·조정 체계 점검, 상황 전파 ■ 응급의료지원체계, 비상진료체계, 가용 자원 등 점검	실태조사, 매뉴얼 관리 등
관심	대비	■ 상동	통보(→위원회)
주의	대비	■ 위기경보 발령, 유관기관 상황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 협력 ■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마련	지원(실무)위원회 개최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계	대응	■ 위기경보 발령·유관기관 상황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재난 대응 및 관련 부처 간 협의체계 가동 ■ 피해보상, 심리지원 등 마련 ■ 필요시, 범정부지원본부 운영협조요청	
심각	대응	■ 위기경보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확보 및 동원 확대 -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상동
수습· 복구	대응	■ 감염병 유행사례 분석, 대응조치 평가총괄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체계 보완 총괄	지원계획 이행·평가·포상

바. 지원계획의 통보 및 적용기간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법 제11조제3항)
- 지원계획은 통상 대규모 재난 발생시 수립하게 되므로, 지원계획의 적용 기간은 해당 재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5. 지원계획의 시행 및 점검

가. 지원계획의 시행 및 보완

- 재난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처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처럼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는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상황의 변경 또는 장기화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기존의 지원계획을 재구성할 수 있음
 - * 재난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가령 경제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법 제13조)

나. 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 또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보완할 수 있음

관련 조문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중앙 - 광역 - 기초 자치단체간의 협조

가. 필요성

- 지원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각각 둔 취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의 규모나 범위, 재정상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한 것임
 - 따라서, 지원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이므로 각각의 지원계획에 따라 이행
- 다만, 전국적 규모의 재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원계획과 각 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의 지원계획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예를 들어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등)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나. 중앙-지방간 혼선사례

- 실제 코로나19 재난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조과정에서 시행착오 발생

I 사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원금 결정에 앞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초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후 초기의 정책적 혼선은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이슈들도 증가할 것이다.(코로나19대응관련)

다.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일관성 확보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는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참여토록 하고 있는 만큼, 지원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 필요

관련 조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지원계획의 적용

-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의 대응과정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 지원수준 등에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불합리한 차별 등이 존재할 경우
 - 지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지원계획 변경 등을 통해 차별성·형평성 등 반영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 재난종료 후 지원계획에 대한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

사례

환경미화 관련 선별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산정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 사업장별 임금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노무비 산정기준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의 지역별, 사업장별 임금수준 차이로 형평성과 차별성 논란(코로나19관련)

【참고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

2021년

비상단계	재해명	비상근무 기간	근무일수	비고
중대본(사회재난)	감염병	'21.1.1. ~ 12.31.	365	
중대본 1·2단계	대설·한파	'21.1.6. ~ 11.	6	
중대본 1단계	대설	'21.1.12. ~ 13.	2	
중대본 1·2단계	대설	'21.1.17. ~ 18.	2	
중대본 1단계	대설·강풍·풍랑·한파	'21.1.27. ~ 29.	3	
중대본 1단계	대설	'21.2.3. ~ 4.	2	
중대본 1단계	대설	'21.2.17. ~ 18.	2	
중대본 1·2단계	대설	'21.3.1. ~ 2.	2	
중대본 1단계	호우	'21.5.15. ~ 16.	2	
중대본 1단계	호우	'21.7.3. ~ 4.	2	
중대본 1·2단계	호우	'21.7.5. ~ 8.	4	
중대본 1단계	호우	'21.7.15.	1	
중대본 1단계	호우	'21.8.1. ~ 2.	2	
중대본 1단계	호우·강풍·풍랑	'21.8.8. ~ 9.	2	
중대본 1·2단계	호우	'21.8.21. ~ 22.	2	
중대본 1·2단계	태풍(오마이스)	'21.8.22. ~ 24.	3	
중대본 1단계	호우·강풍	'21.8.31. ~ 9.1.	2	
중대본 1·2단계	태풍(찬투)	'21.9.15. ~ 17.	3	
중대본 1단계	지진(제주)	'21.12.14. ~ 16.	3	
중대본 1단계	대설	'21.12.17. ~ 18.	2	
중대본 1단계	대설	'21.12.30. ~ 31.	2	

2020년 비상근무 현황

연번	비상단계	재해명	비상근무 기간	근무일수	비고
1	중대본(사회재난)	감염병	'20.2.25. ~ '20.12.31. '21.1.1. ~	311	계속
2	중대본 1단계	대설	'20.2.16. ~ 18.	3	
3	중대본 1단계	호우	'20.6.12. ~ 14.	3	
4	중대본 1단계	호우	'20.6.29. ~ 30.	2	
5	중대본 1단계	호우	'20.7.12. ~ 13.	2	
6	중대본 1단계	호우	'20.7.19. ~ 20.	2	
7	중대본 1단계	호우	'20.7.22. ~ 22.	1	
8	중대본 1·2단계	호우	'20.7.23. ~ 25.	3	
9	중대본 1단계	호우	'20.7.27. ~ 28.	2	
10	중대본 1·2단계	호우	'20.7.28. ~ 31.	4	
11	중대본 1·2·3단계	호우, 태풍(장미)	'20.8.1. ~ 8.16.	16	
12	중대본 1단계	호우	'20.8.22. ~ 23.	2	
13	중대본 1·2·3단계	태풍(바비)	'20.8.24. ~ 27.	4	
14	중대본 1단계	호우	'20.8.28. ~ 29.	2	
15	중대본 1·2·3단계	태풍(마이삭)	'20.9.1. ~ 3.	3	
16	중대본 1·2·3단계	태풍(하이선)	'20.9.5. ~ 8.	4	
17	중대본 1단계	대설	'20.12.12. ~ 13.	2	
18	중대본 1단계	대설	'20.12.29. ~ '21.1.1.	3	
	18회				

2019년 비상근무 현황

연번	비상단계	재해명	비상근무 기간	근무일수	비고
1	중대본(사회재난)	산불	'19.4.5. ~ 4.11.	7	
2	중대본 1단계	호우	'19.6.26. ~ 6.27.	2	
3	중대본 1단계	호우	'19.6.29. ~ 6.29.	1	
4	중대본 1단계	호우	'19.7.10. ~ 7.11.	2	
5	중대본 1단계(7.18.) ⇒ 중대본 3단계(7.19.)	태풍(다나스)	'19.7.18. ~ 7.21.	4	
6	중대본 1단계	호우	'19.7.25. ~ 7.28.	4	
7	중대본 1단계	폭염	'19.8.3. ~ 8.6.	4	
8	중대본 2단계	태풍(프란시스코)	'19.8.5. ~ 8.7.	3	
9	중대본 1단계	태풍(크로사)	'19.8.14. ~ 8.16.	3	
10	중대본 1단계	호우	'19.8.21. ~ 8.22.	2	
11	중대본 2단계	태풍(링링)	'19.9.6. ~ 9.8.	3	
12	중대본 2단계	태풍(타파)	'19.9.21. ~ 9.23.	3	
13	중대본 2단계	태풍(미탁)	'19.10.1. ~ 10.6.	6	
	13회			44일	

2018년 비상근무 현황

연번	비상단계	재해명	비상근무 기간	근무일수	비고
1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 중대본 1단계(격상)	호우, 태풍	'18.6.30. ~ 7.4.	5	
2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 중대본 1·2단계(격상)	태풍	'18.8.20. ~ 8.24.	5	
3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 중대본 1단계(격상)	호우	'18.8.26. ~ 9.1.	7	
4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 중대본 1단계(격상)	태풍	'18.10.4. ~ 10.7	4	
	4회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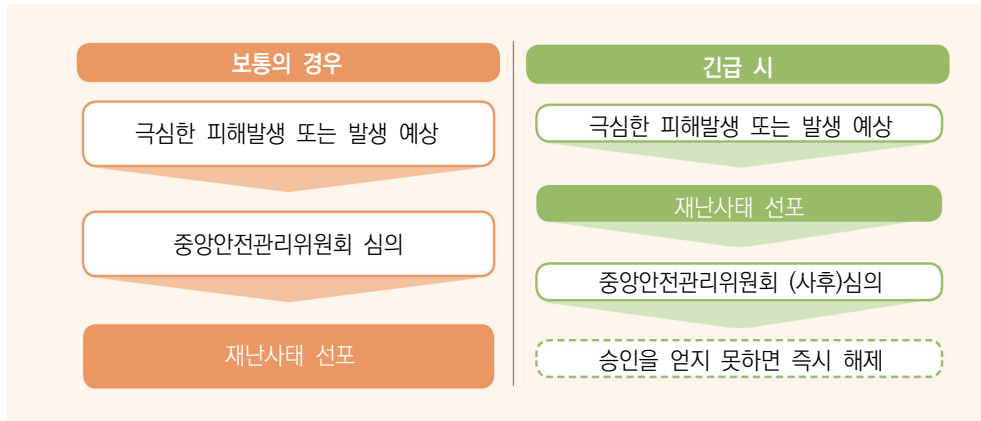
【참고 2】 재난사태 선포 절차 및 조치내용

■ 선포시기 및 대상(「재난안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선포시기)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선포대상)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재난사태 선포」 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 선포 시 가능한 조치

- 재난정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응급지원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자제 권고
-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 과거 선포사례

- (사회재난) 양양·고성 산불('05.4.5.), 태안유류유출사고('07.12.8.), 강원 동해안 산불('19.4.5.),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산불('22.3.4.)
- (자연재난) 선포사례 없음

【참고 3】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비교

구 분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선포대상 재 난	•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 하거나,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선 포 절 차	• 중앙대책본부장(시·도지사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장관 선포 ※ 긴급 시 先 선포, 後 승인	•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자	• 행정안전부장관	• 대통령
선포 후 조 치	•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원 등 응급조치 • 해당지역 공무원 비상소집 • 해당지역 여행자제 권고 •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특 별 지 원	-	•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선 포 해 제	• 선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	-
특 징	•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선제적 대응에 초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혜택 부여
선 포 사 례	• 양양산불('05.4.4.) - '05.4.5. 재난사태 선포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07.12.7.) - '07.12.8. 재난사태 선포 • 강원 동해안 산불('19.4.4.) - '19.4.5. 재난사태 선포 • 경북 울진·강원 삼척/강원 강릉·동해 등 산불('22.3.4./3.5.) - '22.3.4. 재난사태 선포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19.4.4.) - '19.4.6. 특별재난지역 선포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20.1.20.) - '20.3.15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회재난분야 9건(∼'22.1.20.까지) •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22.3.6./3.8.)



05

평가·포상

1. 평가목적
2. 평가항목
3. 평가절차
4. 포상의 실시



1. 평가목적

가. 배경

- 재난종료시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및 결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실효성 제고
- 무엇보다 제대로 된 평가는 향후 재난발생 시 지원계획 수립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

나. 근거

관련 조문

법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평가결과 활용

- (정부업무평가 등 반영) 고용노동부는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항)
 - 다만, 재난발생과 종료시기의 불확정성, 기존 평가제도와 접목 등을 위해 평가 관련 부처(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와 긴밀한 사전협의 필요
 - * ①평가시기 및 평가기간, ②평가기준, 반영방식 등

관련 포문

제14조(포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제도개선) 이행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권고
 -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활용

2. 평가항목

-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이행평가의 평가항목은 추진과제의 적절성, 이행실적 등임 (시행령 제12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항목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부적인 평가지표, 평가내용 등은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수 있음
 - * 아래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예시이며 구체적인 이행평가지침은 외부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마련 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23년)
- (평가지표) 추진계획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충실성, 성과 달성도, 사후관리의 적절성 등 이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
 - 재난상황에 따라 수많은 요인들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이 중요

가.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 ① 재난상황에 맞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선정, 추진과제 수립의 시의성
- ② 예산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충분성
- ③ 사업내용의 적절성, 추진방식의 효율성 등

나.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 ① 과제 이행노력, 목표달성도, 정책효과
- ② 추진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 ③ 과제이행을 위한 투입 노력, 절차·시한 준수, 제도개선 등 입법 노력, 갈등관리

④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기관의 적절한 대응 노력 등

* 필수업무 종사자 애로사항 해소 노력, 국회, 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과 반영 정도 등

다.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 ①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지원내용 교육·홍보의 적극성
- ② 지원계획 이행에 따른 수요자의 체감도 등 당초 의도한 효과 및 장기적 효과 등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인 효과성 등)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행평가와 정부업무평가제도 비교〉

구분	지원계획 이행평가	정부업무평가제도
①평가시기	재난 상황 종료 후	매년 3월말까지
②평가대상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③평가대상기간	지원계획 이행기간 전체	매년 1.1~12.31
④평가항목	적절성, 이행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시행령 제12조 명시)	공동지표+정책단계 (정책입안, 정책집행 단계)
⑤평가등급	없음(미정)	상대평가 7등급

3. 평가절차

가. 재난상황 종료와 평가시기 판단

-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종료 여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임

*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3.4. 21:00) → 재난사태 선포(강원·경북, 3.4. 22:00) → 특별재난지역 선포(울진·삼척 3.6., 강릉·동해 3.8.) → 중앙수습복구지원본부로 전환·운영(3.13. 09:00)

- 재난상황 종료시점에 이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그 이행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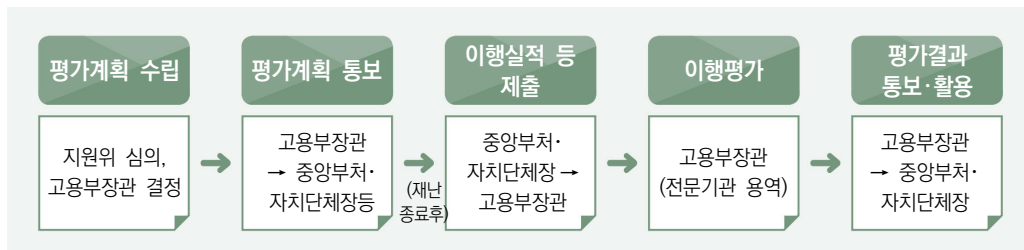
- 재난의 유형·규모 등 여건에 따라 자연재난이나 일부 사회재난의 경우 단기간에 재난이 종료되는 특성이 있어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재난상황이 종료될 수 있음

* 코로나19, 메르스 같은 감염병은 재난이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태풍, 홍수, 산불, 화학사고 등은 단기간 발생하고 종료되는 특징

- 평가대상이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제 평가 시점은 재난 상황 종료 후 바로가 아니라 관련 지원계획의 이행이 종료된 시점이 됨

나.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체계 및 절차〉



- (이행평가지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이행 소요기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절차·평가지표·평가지기 등 이행평가지침 마련
 - 구체적인 평가내용·지표 등은 정부업무평가지침과의 연계 및 재난유형·규모 등을 고려,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평가계획 수립·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 (이행평가지침)을 수립·평가대상기관에 통보
- (평가수행기관)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 평가수행기관은 평가를 함에 있어 지원계획 적정성·이행실적에 대한 정책 수혜대상자,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 (실적제출 및 평가) 재난 종료 후 재난상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내*에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확정
 - * 예시 이행실적 제출(재난종료 또는 이행종료 후 1개월이내) → 평가실시(2개월) → 평가결과 보완 및 협의(1개월) →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 수, 재난 규모, 정부업무평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소요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안)

1. 과제명: 코로나19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이행평가

2. 연구목적

- 코로나19재난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이하 “보호·지원대책”이라 함)을 마련(2020. 12.14.)하였으며
 - 보호·지원대책은 5개 분야(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콜센터), 65개 보호·지원과제로 구성
-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 「필수업무종사자법(2021.11.19.시행)」 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절성·이행실적등 평가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연구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2조제2항·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 12.14. 발표된 보호·지원대책의 적절성과 이행 등을 평가하는 것임
 -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원계획 수립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개선, 보완 필요사항)이 제시되어야 하며
 - 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적용방안도 제시되어야 함(시행령 제12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함(시행령 제12조제2항)

- 이번 연구를 통해 평가절차, 평가지표, 평가결과 반영 등 이행평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도 제시되어야 함
- 특히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평가항목별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함

3. 주요 평가항목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

- * 연구자는 평가항목에 적절한 평가지표 및 배점 등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①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 * **예시** 재난상황에 맞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선정, 추진과제 수립의 시의성, 예산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충분성 등

②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실적

- * **예시** 과제 이행노력, 목표달성도, 정책효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각 기관의 적절한 대응 노력 등

③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적

- * **예시**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지원내용 교육·홍보의 적극성, 지원계획 이행에 따른 수요자의 체감도 등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의 공정성·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원계획 적정성·이행실적에 대한 수혜대상자·노사단체(고객중심), 관련기관 의견수렴
- 이행평가의 정부업무평가 등에 적절한 반영을 위해 평가주관부서(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 반영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는 매년 자체평가계획 수립·평가실시 체계와 평가시기·평가 대상기간·평가항목·평가등급 등이 갖추어져 예측가능하고 정형화 되어 있음
 - 반면, 대규모 재난은 발생·종료시점 예측 곤란, 재난발생 후 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환경의 특수성으로 정부업무평가절차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계획 이행평가와 그 결과가 정부업무 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
 - 우선, 각 기관의 주요정책과제 평가라는 정부업무평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각 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 지원계획 이행평가의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도록 평가항목별 평가지표·평가내용 등을 구성해야 함
- 또한, ①평가방식·평가지침등 이행평가지침에 반영할 내용과 ②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각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등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유효적절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함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상황이 아니고 산불재난과 같이 특정지역,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발생할 경우도 고려되어야 함

4. 연구진행 상황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22.11월말) → 최종 보고(12월 중순) → 최종보고 제출(12월말)

4. 포상의 실시

가. 배경

- 재난종료 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공로가 있는 현장·일선 근무자 등에 대해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나. 근거

관련 조문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다. 포상의 종류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포상의 종류(국무총리, 대통령표창)를 조정 할 수 있음

라. 규모 및 운영 시기·절차

- 재난상황의 발생 시기,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상황 종료 후 규모, 시기를 정함



필수업무 관련 Q&A

1. 필수업무 및 종사자 판단기준
2. 실태조사
3. 적용순위
4. 지원위원회 개최 시기
5. 적용대상
6. 지역위원회 운영



1. 필수업무 및 종사자 판단기준

① 필수업무 범위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정하고 있을 뿐 판단기준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필수업무는 재난상황에 따라 광범위하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원위원회에서 재난유형·상황,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토록 한 것임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2호: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업무 종사자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지원위원회는 필수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지원 필요성이 있는 종사자를 정함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3호: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필수업무를 수행하면 모두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 ⇒ 필수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모두 「필수업무종사자법」에 의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 지원위원회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수행 여건이나 보호·지원 필요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범위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실태조사

① 자치단체도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도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② 실태조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 ⇒ 실태조사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음.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평상시에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임
-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발생빈도가 높거나 팬데믹처럼 파급력이 큰 재난 등 재난상황·유형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3. 적용순위

① 같은 재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의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가 다를 경우 적용은?

⇒ 재난유형과 규모에 따라 같은 재난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정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재난으로부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위원회를 통해 필수업무 및 종사자를 정함. 반면, 지역위원회는 해당 재난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함

- 다만,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상호 간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위원회에서 정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원수준 등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지?

⇒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③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원계획과 별도로 필수업무 및 종사자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시도위원회에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결정한 경우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연속성계획과 중첩될 수 있는데?

- ⇒ 지원계획과 기능연속성계획은 목적이나 취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기능연속성계획은 공공부문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 반면, 지원계획은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 ⇒ 예를 들어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라 정부청사 경비 업무시간이 축소되거나 교대근무 변경 등으로 경비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되어 보호·지원이 되는 것은 아님

4. 지원위원회 개최 시기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지원위원회도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 ⇒ 「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상황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를 소집해야 함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8조제4항: ①「재난안전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 ②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위원회는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 ⇒ 「필수업무종사자법」에 지원위원회 개최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신속하게 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유효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대규모 재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 또는 물리적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인명·재산피해 등에 대한 일정한 수치 이상이 요구되는 것도 아님. 따라서 대규모 재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대적 또는 사회적 관점이나 사회가 가지는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재난에 대해 보호·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수 있고, 지원위원회에서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등

5. 적용대상

① 필수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지원대상이 되는지?

⇒ 「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3호에 정의된 필수업무 종사자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람을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②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적용을 받는지?

⇒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는 민간이든 공공부문이든 보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지?

⇒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라 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지원위원회에서 보호필요 정도, 기존의 제도에 따른 보호체계,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게 됨

⇒ 또한, 공공영역이 민간부문보다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보호·지원체계가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은 있음

6. 지역위원회 운영

① 시·도 또는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시·도 또는 시·군·구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위원회 설치 시 동 위원회의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병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위원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부 록

- Ⅰ 「필수업무종사자법」
- Ⅰ 「재난안전법」
- 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 훈령 제388호)
- 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 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
- Ⅰ 재난유형별 관련법령 현황
- Ⅰ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기관 및
소관부서 현황



Chapter 07 부 록

부록 1 「필수업무종사자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1. 5. 18. 법률 제18182호	제정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2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장 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조정 이 필요한 사항 2.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제11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8182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32129호, 2021. 11. 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 12. 7.]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6. 1. 7., 2020. 6. 9., 2022. 1. 4.>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에 관한 사항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15. 6. 30.> 5.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전문개정 2010. 12. 7.]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3. 1. 5.]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2. 3., 2020. 6. 9.〉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 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 12. 7.] 【시행규칙】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 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 6. 30.>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 및 담당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6. 30.>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대변인: 차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3. 부대변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차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12. 8.> 1. 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2. 대변인 및 부대변인: 공동 차장이 각각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⑥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실무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8.> 1. 행정안전부, 외교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소속 공무원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 차장으로 지명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6. 30., 2017. 7. 26., 2017. 9. 5.>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7.]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목개정 2013. 8. 6.]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2. 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2. 7.]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③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별표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2022. 1. 4.>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제목개정 2017. 1. 1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 8. 6.>]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시·군·구에 대하여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④ 삭제 <2017. 1. 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3., 2014. 2. 5., 2020. 6. 2.> 1. 국가핵심기반의 명칭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8. 23., 2013. 3. 23., 2014. 11.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본조신설 2017. 1. 17.] [제목개정 2019. 12. 3.]	19., 2017. 7. 26., 2018. 1. 18., 2020. 6. 2.>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20. 6. 2.] [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9조의2로 이동 <2014. 2. 5.>]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8.] [제목개정 2020. 6. 2.]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3. 8. 6.>]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5.]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⑤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재난안전법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	

부록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①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후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징후 포착 시는 위기징후와 관련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②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기관별 위기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하생략)

③·④(생략)

제21조(위기 평가) ①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지속시간·파급효과·국내외여론·정부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기관은 위기의 위협 또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분야에서 어떠한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한다.

④(생략)

제37조(공조체제 유지) ① 최초 상황 및 상황의 변화는 최단 시간 내에 관련기관에 보고·전파되어야 한다.

② 관련기관은 상황정보의 공유, 대응책의 공동 협의, 위기관리기구의 합동 구성·운영, 자원의 지원 등을 통해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③ 각 부처·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기구가 가동될 경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한다.

제41조(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① 복구 단계 전환 또는 위기 상황 종료 후 관련 위기관리 체계의 운영 실태와 위기관리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② 진단·평가는 위기관리 체계의 운영,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의 가동, 매뉴얼의 적용, 위기관리 활동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③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기관리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보완함으로써 위기 발생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제119조(협조체계 강화 및 운영 연속성 확보) ① 재난 관련 부처·기관은 위기 발생 시 위기 대응 기능들이 신속히 통합 수행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유지·강화하여야 한다.

- ② 부처·기관은 재난발생 시 주관기관의 재난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부처·기관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소관분야 필수 기능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주요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록 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2.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안전에 대해 사전 논의·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4), 전문가(4), 관련부처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근로기준정책과장이 주관하여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안 제출) 위원회등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의원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회등의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사항의 통보 등) 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등) 이 운영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 안내 사항

근로기준정책과-3737, 2021.11.19

◆ (배경)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I.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울러,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위원회(법 제9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 해당 지역내 ①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③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위원회 회의는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③ 지원계획(법 제11조제4·5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행정·재정적 지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 국가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⑤ 포상 및 평가(법 제14조)

- (포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법 제12조제2항)

- (정부업무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평가

⑥ 협조 의무(법 제1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II. 조례 제·개정시 유의 사항

① 정 의

-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
- 이에, 감염병 등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필수업무를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지양

적절한 사례

-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조에 따라 ○○시장(도지사·시군구청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필수업종”이란 ...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하여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 ▶ “필수업무”란 재난 발생 시에도 ...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종사자의 범위는 근로계약으로 한정하지 않고 필수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이 적절

■ 적절한 사례

-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필수업무 종사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할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여야 함

■ 적절한 사례

- ▶ 위원장은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함이 바람직

적절한 사례

-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

적절한 사례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는 「OO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OO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 「OO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O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 「△△조례」제O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원계획의 수립

-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가 포함된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적절한 사례

- ▶ ① ○○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Ⅰ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 ① ○○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기본·실행계획)을 매년(3·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부록 6 재난유형별 관련법령 현황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공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기상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재해구호법 초·중등교육법 농업재해대책법 하천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예보업무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지진·지진해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 업무규정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재해복구 추진지침*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지진재난 심리지원 매뉴얼*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대형화산폭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항공보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수도법 지진화산 업무규정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재해복구 추진지침*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지진재난 심리지원 매뉴얼*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적조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수산업법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천법 수도법 기상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조수	자연재해대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상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하천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기상예보업무규정 및 방재기상운영규정 해양관측자료관리규정 및 해양관측업무규정 해양예보업무규정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우주전파재난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파법 시행령
녹조	자연재해대책법 물환경보전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산사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기상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재해구호법 초·중등교육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민방위경보 발령·전달규정 예보업무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낙뢰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광산보안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상법 수도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보업무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폭염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상법 수도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보업무규정 방재기상운영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자연우주물체추락 ·충돌	자연재해대책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산불	산림보호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산불상황실 운영규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기상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유해화학물질유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분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업법 국가긴급방재계획 방재대책본부운영규칙 해양환경관리법 민방위기본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HNS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협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상법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공동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국가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공동구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댐붕괴	하천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지하철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고속철도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대형화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IAEA)
해양선박사고	해사안전법 선박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운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장 인적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축물붕괴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철도건설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정시설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민방위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가축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검역법 의료법 메르스 대응지침 사스(SARS) 관리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2009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 자체위기관리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전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사고	자연재해대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및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전안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민방위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전력분야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유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혈액관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용수	자연재해대책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재난유형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정보시스템 미등록)	
육상화물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GPS전파혼신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해양유도선 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연장· 경기장사고	자연재해대책법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부록 7 재난 및 사고유형별 주관기관 및 소관부서 현황

구분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소관부서
자연재난-1	풍수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 205-5239
자연재난-2	지진·지진해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 205-5195
자연재난-3	대형 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044) 205-5195
자연재난-4	적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 200-5641
자연재난-5	가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044) 205-6361
자연재난-6	조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 200-5357~8
자연재난-7	우주전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 202-6435
자연재난-8	조류대발생(녹조)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62
자연재난-9	산사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 481-8846
자연재난-10	낙뢰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044) 205-6361
자연재난-11	한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 205-5233
자연재난-12	폭염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044) 205-6366
자연재난-13	자연 우주물체 추락·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 202-4625
사회재난-1	산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 481-4257~8
사회재난-2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 201-6838
사회재난-3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65, 7071

구분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소관부서
사회재난-4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 200-5293
사회재난-5	공동구 재난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044) 205-6181, 6177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 201-3739
사회재난-6	댐 붕괴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 201-7617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 203-5158
사회재난-7	지하철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 201-4601, 4609
사회재난-8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 201-4601, 4609
사회재난-9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화재대응조사와 044) 205-7472
사회재난-10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 397-7355, 7357
사회재난-11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 200-5856
사회재난-12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 202-7755, 7758
사회재난-13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 201-4995
사회재난-14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보안과 02) 2110-3393
사회재난-15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 201-2522
사회재난-16	감염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 202-2508
사회재난-17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 202-6435
사회재난-18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 2100-2811
			감사담당관 02) 2100-2794

구분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소관부서
사회재난-19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 397-7359, 7352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 203-5298
사회재난-20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 203-5254
사회재난-21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 203-5227
사회재난-22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 202-2471, 77
			약무정책과 044) 202-2487, 94
			생명윤리정책과 044) 202-2943, 46
사회재난-23	식용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 201-7115
사회재난-24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 201-4019
사회재난-25	GPS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 202-6435
사회재난-26	해상 유도선 수난사고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 835-2249
사회재난-27	공연장 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 203-2736
			스포츠산업과 044) 203-3156
사회재난-28	초미세먼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 201-6875, 6872
주요상황-1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담당관 044) 205-1802
주요상황-2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 201-3932
주요상황-3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 201-4364
주요상황-4	항공기사고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 201-4247

구분	재난 및 사고유형	주관기관	소관부서
주요상황-5	항공운송마비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 201-4222
주요상황-6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 203-5238
주요상황-7	접경지(댐)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 201-7617
	접경지(수질오염)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65, 7071
	접경지(산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 481-4257~8
	접경지(감염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 202-2508
주요상황-8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 205-4149, 4150
주요상황-9	황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 201-6872
주요상황-10	위험물사고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 205-7481, 82
주요상황-11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 201-1861
주요상황-12	문화재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 481-4973
주요상황-13	학교시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 203-6355
주요상황-14	국방시설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 748-5769
주요상황-15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44) 202-4625
주요상황-16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1718, 1723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 「재난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 연구」, 2021.12
-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2.3.29
-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2020.10
-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1.6
-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
- 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매뉴얼」, 2008.11
- 행정안전부, 「2022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안)」, 2021.12
- 이승윤외4,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2021
- 데이비드 그레이버, 「불싯잡 Bullshit Jobs」, 민음사, 2021.10
- 존C.머티, 「재난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동녘, 2021
- 조석현, 「재난관리론」, 화수목, 2018
- 임현우, 「재난관리론-이론과 실제-」, 박영사, 2021.5
- 채민석,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2020.12
- 이연주, “코로나19시기, 노인일자리 실천현장 경험”, 2021.12
- 홍성훈, “코로나19의 영향과 미국 노동조합의 대응”, 2020.5
- 김계현·김진숙·이정찬·문성제·지성인·임선미·박정훈,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조사”, 2021.8
- 석재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2020
- 신수정,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2021.8
- 오윤미, “대만의 코로나19사태 대응과 시사점”, 2020.6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마주한 어려움”, 2021.11, 141-145면
- 이연주, “코로나19 시기, 노인일자리 실천현장경험: 대구·경북지역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종사자의 경험과 과제를 중심으로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며,” 노인복지연구 제76권 제4호, 2021, 56-57면, 60-61면
- 이병두외, “산불진화 활동시 유해물질 노출평가,” crisisonomy 제11권 제12호, 2015, 111-123면
- 함태성,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2019, 537면
- 윤정연외4,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폐기물의 발생현황, 관리 및 처리,” 대한환경 공학회지 43권 제12호, 2021, 739-746면
- 박고은외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1호, 2021, 739-746면
- 세계노동소식, “미국, 전국적 체인 식료품점 노동자들, 위험수당 지급받아,” 국제노동브리프, 2020.5월, 105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1.3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

발행처 | 고 용 노 동 부
근로기준정책과
전화: 044-202-7527

인쇄처 | 동 명 기 획
전화: 044-868-7542